

서울시 산재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22. 12. 31.

조사기관 : 노무법인 참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서울시 산재 취약노동자 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노무법인 참터

대표 고 경 섭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귀하

연구진

책임연구원 : 유 성 규 (노무법인 참터)

공동연구원 : 고 경 섭 (노무법인 참터)

공동연구원 : 김 미 현 (노무법인 선)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산재 취약노동자 실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정책 수립 및 집행의 필요성	11
1. 소규모 사업장 산재 실태	11
2.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산재 실태	18
3.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정책 수립 및 집행의 필요성	24
제3장 서울시 산재 취약노동자 설문조사 분석	28
1. 설문조사 개요	28
2. 고용현황	34
3. 근무실태	40
4. 산재 발생 및 대응 실태	50
5. 취약노동자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68
제4장 서울시 산재 취약노동자 심층인터뷰 분석	77
1. 심층인터뷰 개요	77
2. 계약 형태 및 노동시간	79
3. 산재보험 가입 현황	83
4. 산업안전보건 실태	85
5. 업무상 재해 실태	96

6. 갑질 경험 및 대응실태	101
7. 심층인터뷰 결과 요약	104
제5장 결론 -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109
1. 표준 계약서 및 표준 근로조건 가이드라인 작성 및 보급 필요성	109
2. 산재 보상을 위한 상시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11
3. 산재보험 가입 지원 사업의 필요성	113
4. 산업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	115
5. 안전보호구 지원 사업의 필요성	117
6.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지원 사업의 필요성	119
7. 스트레스 및 감정노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사업의 필요성	121
8.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123
9. 작업도구 정비 지원의 필요성	126
10.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지원 필요성	127
11. 서울시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성	129
12. 정책적 우선 순위 고려 필요성	130
【참고 문헌】	131
【부록】 설문지	133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고용노동부 “2021.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에 따르면, 2021년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2,080명이었음. 이 중에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828명,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1,252명이었음.

[표 1-1] 2021년 산재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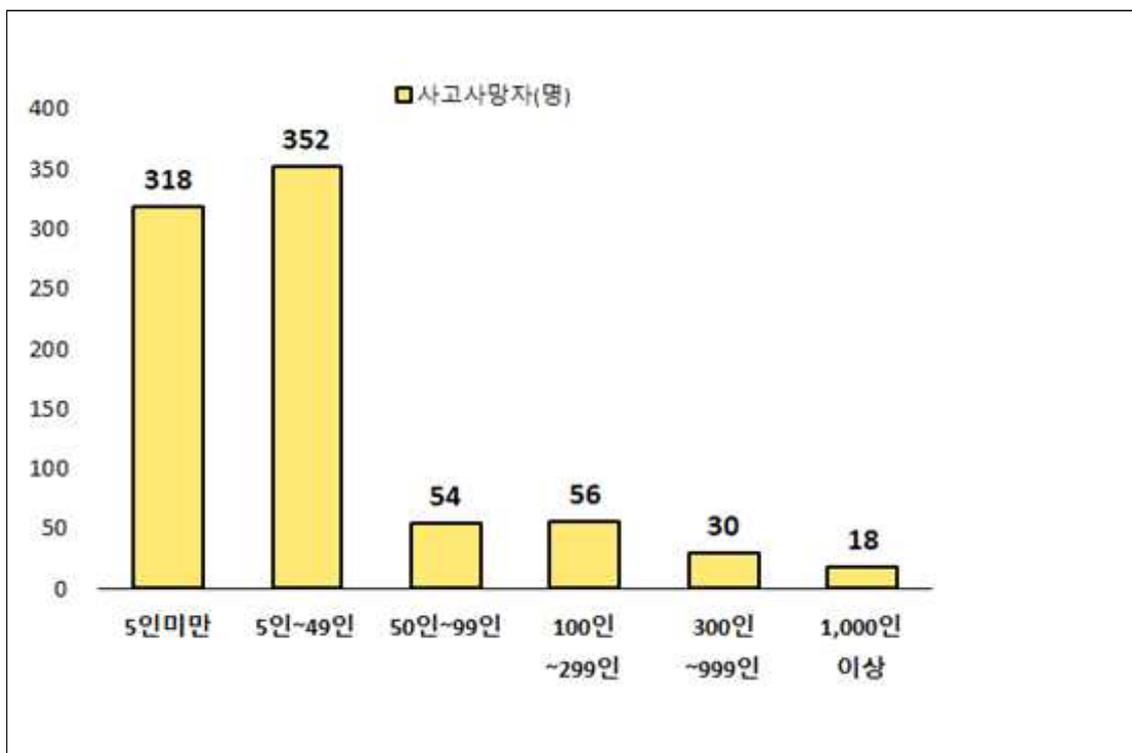
구분	2021. 1~12월	전년 동기	증감	
			증감	증감율
○ 재해율(%)	0.63	0.57	0.06	10.5
- 사고재해율	0.53	0.49	0.04	8.2
- 질병발생률	0.11	0.08	0.03	37.5
○ 사망만인율(‰)	1.07	1.09	-0.02	-1.8
- 사고사망만인율	0.43	0.46	-0.03	-6.5
- 질병사망만인율	0.65	0.62	0.03	4.8
○ 재해자수(명)	122,713	108,379	14,334	13.2
- 사고재해자수	102,278	92,383	9,895	10.7
- 질병재해자수	20,435	15,996	4,439	27.8
○ 사망자수(명)	2,080	2,062	18	0.9
- 사고사망자수	828	882	-54	-6.1
- 질병사망자수	1,252	1,180	72	6.1
○ 근로자수(명)	19,378,565	18,974,513	404,052	2.1

출처: 고용노동부 2021.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주) 위 수치는 산재보험 승인 통계에 기초하고 있어 실제 업무상 재해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를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명-49명 사업장에서 352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 중 42.5%를 차지했음.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318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 중 38.4%를 차지했음. 50명-99명 사업장에서는 54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 중 6.5%를 차지했음. 100명-299명 사업장에서는 56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 중 6.7%를 차지했음. 300명-999명 사업장에서는 30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 중 3.6%를 차지했음.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18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 중 2.2%를 차지했음.

[그림 1-1] 2021년 업무상 사고 규모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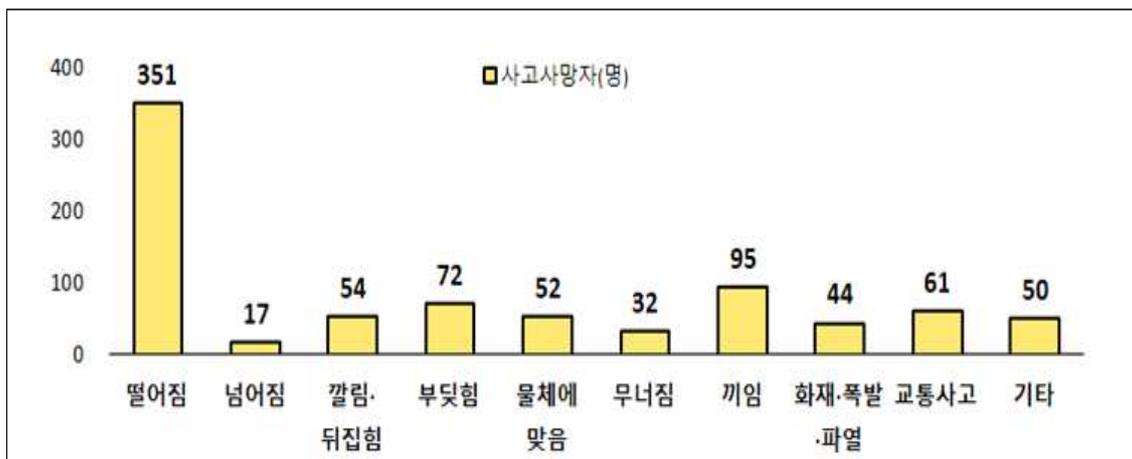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2021.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 결국,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사망이 다발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유해위험 업무 및 공정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업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인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재정적, 인적 한계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절한 지도, 감독 등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임.

○ 업무상 사고 사망자의 원인을 살펴보면,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이 351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42.4%를 차지했음. ‘끼임’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자 중 95명으로 11.5%를 차지했음. ‘부딪힘’으로 인한 사망이 72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8.7%를 차지했음.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의 사고 유형은 기초적인 안전보건관리만 이뤄져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 유형임.

[그림 1-2] 2021년 업무상 사고 발생 원인



출처: 고용노동부 2021.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주) 기타는 절단·베임·찢림, 감전, 이상온도접촉, 빠짐·익사, 화학물질누출, 산소결핍, 동물상해 등임

○ 상기 통계와 앞서 살펴본 규모별 통계를 종합해 볼 때, 소규모 사업장의 부실한 안전보건관리 능력에 기인해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기초적인 관리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우리나라의 이 같은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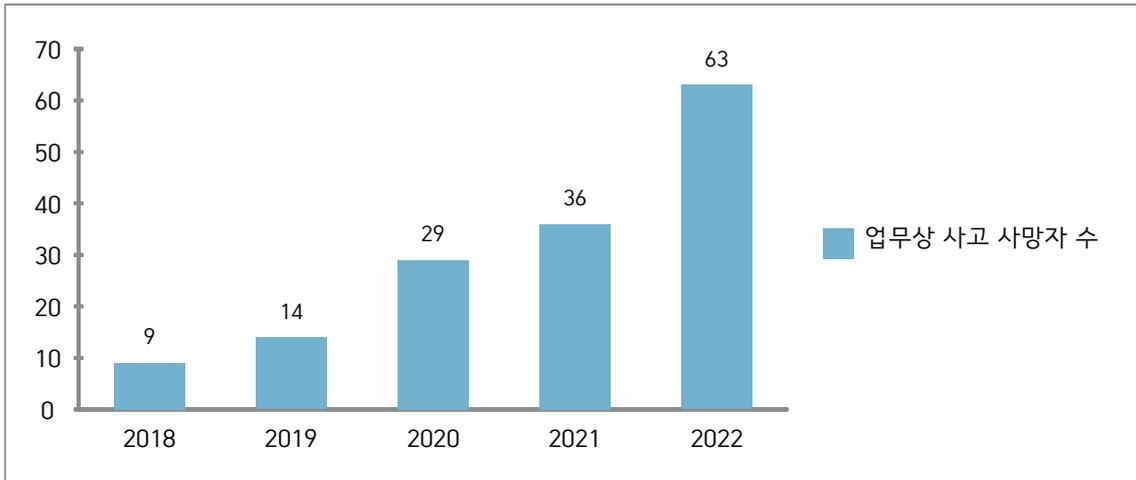
무상 사고 유형 때문에, 우리나라 산재의 특성을 이른바 후진국형 산재라고 평가하기도 함.

○ 최근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는 여전히 전통적인 근로계약 하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고용노동부의 감독행정 역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보호에 집중되어 있음.

○ 이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의 ‘법적, 행정적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음. 또한 기업은 이 노동자들로부터 노무를 수령함으로써 이윤은 얻지만,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 비용에 전가하는 일종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가 2022년 발표한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특수고용노동자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63명으로 2021년 대비 27명이 증가했음. 특수고용노동자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 9명, 2019년 14명, 2020년 29명, 2021년 36명, 2022년 63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1-3] 2018년-2022년 특수고용노동자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 서울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유무와 상관없이 노동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음. 또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할 경우, 소규모 사업장, 새로운 고용형태 등 고용노동부의 감독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역에서 효과적인 산재예방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음.

○ 이에, 서울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 및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정책 및 감독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산재 취약노동자에 대한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시의 산재 취약노동자 지원 및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제 및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정책 및 감독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서울시 정책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음. 이에, 서울시 산재예방 및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본 연구에서 수행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의 목적은 일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의 표본 선정 및 조사 항목도 대표성보다는 효과적인 정책수요 발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음.

○ 설문조사의 대상 및 내용

- 설문조사는 과거 산재실태조사가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배달·배송·운전, 전문서비스(번역·강사·상담 등), 가사·청소·돌봄, 미술 등 창작활동,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등 5개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 1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 설문 표본 구성은 김준영 외(2021)에서 파악된 서울시 플랫폼 노동자 직종 비율을 기초로 구성하였음(아래 표 참조).

[표 1-2] 플랫폼 종사자 지역별 인원 분포

순위	서울		경기·인천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광역시도		전국 평균	
	직종	비율 (%)	직종	비율 (%)	직종	비율 (%)	직종	비율 (%)	직종	비율 (%)
1	A	73.1	A	77.4	A	74.2	A	79.3	A	76.0
2	B	10.6	B	7.8	E	8.1	B	6.6	B	8.1
3	C	4.6	C	4.8	B	6.2	E	6.4	E	4.8
4	D	4.1	E	3.5	C	4.5	D	2.6	C	4.3
5	E	3.4	F	2.6	G	2.6	C	2.5	D	2.9

출처: 김준영 외,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한국고용정보원, 2021

주) A : 배달·배송·운전, B: 전문서비스(번역·강사·상담 등), C: 가사·청소·돌봄, D: 미술 등 창작활동, E: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F: IT관련 서비스, G: 미용·세탁·장례 등 개인 서비스

-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산재 취약노동자에 대한 서울시 산재예방 및 지원정책을 위한 정책 수요 및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따라서 서울시 및 타 지자체, 해외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 수립이 필요한 정책적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통계 - 연령(객관식) - 성별(남녀) - 업종 - 현 직종 종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환경 -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주40시간 초과~52/주52~60/주 60시간 초과 4개 구간) - 야간근로(10시~6시) 실태 - 휴무 실태 -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 - 고객 갑질 경험

✓ 사회보험

- 사회보험 적용 실태
- 산재보험 미가입 이유(정보 부족/ 금전적 부담/ 사업주 반대/ 기타)
- 산재보험 미가입시 민간보험 등 대비
- 사회보험 관련 정부,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
- 건강검진 실태
- 건강검진 안 받는 이유(대체인력이 없어 휴가를 낼 수 없어서, 일당이 아까워서, 귀찮아서, 받아야 되는지 몰라서,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 과거 교육 경험(산재 및 지원관련, 산업안전, 도로교통 관련 법령 등)

✓ 업무중 부상, 질병 실태

- 산재 경험
- 산재 발생시 치료 방법
- 안전보호구 사용 여부
- 안전보호구 비용 부담 주체
- 작업도구(오토바이 등) 정기적 정비 여부
- 정비를 하지 않는 이유(금전적 이유/귀찮아서/잘 몰라서)

✓ 서울시 정책

- 기본 서울시 정책의 인지 정도
- 서울시 정책 우선 순위

○ 심층인터뷰의 대상 및 내용

-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산재 취약노동자의 정책적 수요 및 시사점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의 필요성 및 우선 순위 등은 파악할 수 있으나, 정책의 구체적 내용 및 주안점 등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임.

- 이에, 서울시 산재예방 및 지원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였음.

- 심층인터뷰 주요 대상은 배달 및 배송, 운전(라이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전문서비스(방과후 교사, 예술강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방송작가), 5인 미만 사업장(귀금속 세공업체 노동자, 편의점 노동자)로 구성하였음.

[표 1-3] 심층인터뷰의 주요 대상

연번	직종	직업	성별	연령대	경력
1	배달	라이더	남	40대	1년
2		퀵서비스기사	남	40대	10년
3	배송·운전	택배기사	남	40대	3년
4		대리운전기사	남	50대	11년
5	전문서비스	방과후교사	남	50대	24년
6		예술강사	남	40대	15년
7		학습지교사	여	50대	27년
8	프리랜서	방송작가	여	30대	10년
9	5인 미만 사업장	귀금속세공업체 노동자	남	50대	30년
10		편의점 노동자	여	20대	2년

- 심층인터뷰 역시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와 같이 산재 취약노동자에 대한 서울시 산재예방 및 지원정책을 위한 정책 수요 및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따라서 서울시 및 타 지자체, 해외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 수립이 필요한 정책적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음.
- 심층인터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해당 경험이 있다면 내실 있게 진행되는지, 형식적인 교육은 아닌지, 전문성 없는 교육은 아닌지 등 구체적 설명 요청) ✓ 사업장의 휴게시설, 휴게시간은 확보되어 있는지 (확보되어 있다면 어

면 점이 부족한지, 어떤 점이 열악한 지 등 구체적 설명 요청)

- ✓ 업장의 유해위험장소 등에 안전보건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안전보건표지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구체적 사례 수집 필요)
- ✓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유해유인조사, 위험성평가와 같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는지
- ✓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안전보건과 관련한 감독이나 지도가 나온 적이 있는지
- ✓ 사업장에서 안전보호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업무의 특성상 어떤 안전보호구가 필요한지, 자비로 구입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지 등 구체적 설명 요청)
- ✓ 사업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안전교육을 받은 방식 질문)
- ✓ 사업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설비, 장치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안전설비, 장치 등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구체적 사례 수집 필요)
- ✓ 안전보호구, 안전설비, 장치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산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지
- ✓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외에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프로그램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
- ✓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해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업무상 재해(사고, 질병)를 당한 경우가 있는지, 이 경우 치료비나 휴업손실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 ✓ 산재 보상에 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여부 (사업장 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역단체 등 포함)
- ✓ 산재를 당하여 산재보험 신청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 (해당 경험이 있다면 산재 처리 과정상의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요청)
- ✓ 산재를 당했음에도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지 여부 (해당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인 이 설명 요청)

제2장 산재 취약노동자 실태와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정책 수립 및 집행의 필요성

1. 소규모 사업장 산재 실태

○ 2021년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수는 19,378,565명,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수는 2,876,635개소였음. 고용노동부 2021.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자수는 122,713명이었고, 이 중 업무상 재해 사망자수는 2,080명이었음.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32조 2,640억원, 근로손실일수는 60,492,479일에 이르렀음.

[표 2-1] 2021년 산업재해 발생현황(1)

연도	적용 사업장수 (개소)	대상 근로자수 (명)	재해자수(명)					재해율 (%)	신체장애자수(명)			경제적손실추정액 (단위: 백만원)			근로 손실 일수 (일)
			계	사망	부상	업무상 질병 요양자 수	계		사고 장애자 수	업무상 질병 장애자 수	계	산재 보상금	간접 손실액		
2020년	2,719,308	18,974,513	108,379	2,062	91,237	14,816	0.57	37,426	29,813	7,613	29,984,095	5,996,819	23,987,276	55,343,490	
2021년	2,876,635	19,378,565	122,713	2,080	101,182	19,183	0.63	41,772	31,731	10,041	32,264,700	6,452,940	25,811,760	60,492,479	
증감 (%)	157,327 (5.79)	404,052 (2.13)	14,334 (13.23)	18 (0.87)	9,945 (10.90)	4,367 (29.47)	0.06	4,346 (11.61)	1,918 (6.43)	2,428 (31.89)	2,280,605 (7.61)	456,121 (7.61)	1,824,484 (7.61)	5,148,989 (9.30)	

출처: 고용노동부 2021.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 업무상 재해 발생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 재해자 수는 102,713명이었고 업무상 질병 재해자 수는 20,435이였음. 업무상 재

해 사망자 중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는 828명이었고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는 1,252명이었음.

[표 2-1] 2021년 산업재해 발생현황(2)

구분	2021. 1~12월	전년 동기	증감	
			증감	증감율
○ 재해율(%)	0.63	0.57	0.06	10.5
- 사고재해율	0.53	0.49	0.04	8.2
- 질병발생률	0.11	0.08	0.03	37.5
○ 사망만인율(‰)	1.07	1.09	-0.02	-1.8
- 사고사망만인율	0.43	0.46	-0.03	-6.5
- 질병사망만인율	0.65	0.62	0.03	4.8
○ 재해자수(명)	122,713	108,379	14,334	13.2
- 사고재해자수	102,278	92,383	9,895	10.7
- 질병재해자수	20,435	15,996	4,439	27.8
○ 사망자수(명)	2,080	2,062	18	0.9
- 사고사망자수	828	882	-54	-6.1
- 질병사망자수	1,252	1,180	72	6.1
○ 근로자수(명)	19,378,565	18,974,513	404,052	2.1

출처: 고용노동부 2021.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 업무상 재해 발생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 수는 37,267명, 사망자 수는 567명이었음. 5인-49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 수는 51,909명, 사망자 수는 792명이었음. 50인-99인 사업장의 재해자 수는 9,653명, 사망자 수는 174명이었음. 100인-299인 사업장의 재해자 수는 11,314명, 사망자 수는 210명이었음. 300인-999인 사업장의 재해자 수는 6,542명, 사망자 수는 229명이었음.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자 수는 6,001명, 사망자 수는 108명이었음.

○ 업무상 재해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재해율과 만인율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재해율(%)은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을 의미함. 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사망만인율(‰)=(사망자수/근로자수)×10,000]을 의미함.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1.16, 사망만인율은 1.76명이었음. 5인~49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0.62, 사망만인율은 0.94였음. 50인~99인 사업장의 재해율은 0.48, 사망만인율은 0.87이었음. 100인~299인 사업장의 재해율은 0.44, 사망만인율은 0.81이었음. 300인~999인 사업장의 재해율은 0.38, 사망만인율은 1.35였음.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율은 0.40, 사망만인율은 0.72였음.

[표 2-2] 업무상 재해 사업장 규모별 현황

구 분	2021. 1~12월			전년 동기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 만인율		사망자수	사망 만인율
총 계	19,378,565	122,713	0.63	18,974,513	108,379	0.57
		2,080	1.07		2,062	1.09
5인 미만	3,212,578	37,267	1.16	3,005,960	33,862	1.13
		567	1.76		500	1.66
5인~49인	8,383,877	51,909	0.62	8,272,899	47,048	0.57
		792	0.94		803	0.97
50인~99인	1,999,615	9,653	0.48	1,979,709	8,073	0.41
		174	0.87		160	0.81
100인~299인	2,577,703	11,341	0.44	2,523,122	8,933	0.35
		210	0.81		260	1.03
300인~999인	1,699,694	6,542	0.38	1,708,100	6,180	0.36
		229	1.35		255	1.49
1,000인 이상	1,505,098	6,001	0.40	1,484,723	4,283	0.29
		108	0.72		84	0.57

출처: 고용노동부 2021.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1.16인 반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율은 0.40으로,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9배 많은 산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은 1.76인 반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은 0.72로,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4배 많은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음.

○ 업무상 사고 통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과 1,000인 이상 사업장 간의 격차가 더 큼.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재해율은 1.06인 반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 재해율은 0.23으로,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6배 많은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0.99인 반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0.12로,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8.25배 많은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음.

[표 2-3] 업무상 사고 규모별 현황

구 분	2021. 1~12월			전년 동기		
	근로자수	사고 재해자수	사고 재해율	근로자수	사고 재해자수	사고 재해율
		사고 사망자수	사고사망 만인율		사고 사망자수	사고사망 만인율
총 계	19,378,565	102,278	0.53	18,974,513	92,383	0.49
		828	0.43		882	0.46
5인 미만	3,212,578	33,934	1.06	3,005,960	31,159	1.04
		318	0.99		312	1.04
5인~49인	8,383,877	44,782	0.53	8,272,899	41,524	0.50
		352	0.42		402	0.49
50인~99인	1,999,615	7,760	0.39	1,979,709	6,679	0.34
		54	0.27		53	0.27

구 분	2021. 1~12월			전년 동기		
	근로자수	사고 재해자수	사고 재해율	근로자수	사고 재해자수	사고 재해율
		사고 사망자수	사고사망 만인율		사고 사망자수	사고사망 만인율
100인~299인	2,577,703	8,596	0.33	2,523,122	6,715	0.27
		56	0.22		78	0.31
300인~999인	1,699,694	3,700	0.22	1,708,100	3,880	0.23
		30	0.18		23	0.13
1,000인 이상	1,505,098	3,506	0.23	1,484,723	2,426	0.16
		18	0.12		14	0.09

출처: 고용노동부 2021.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 업무상 사고 사망의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떨어짐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351명으로 42.39%였음. 끼임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95명으로 11.47%였음. 부딪힘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72명으로 8.7%였음. 깔림, 뒤집힘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54명으로 6.52%였음. 물체에 맞는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52명으로 6.28%였음. 이처럼, 업무상 사고 사망의 발생 원인의 특징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 깔림, 뒤집힘, 물체에 맞는 사고 등 기초적인 안전수칙, 안전관리, 안전보호구 지급 등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임.

○ 이와 같은 특징은 업무상 사고 사망이 주로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다발하기 때문임.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열악한 재정적, 기술적, 인적 역량의 한계로 인해 기초적인 안전관리는 물론 안전보호구나 안전설비가 적절히 구비, 지급되지 못하기 때문임. 실제로, 떨어짐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351명 중 30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고 끼임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95명 중 9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음. 또한 부딪힘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72명 중 53

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고 깔림, 뒤집힘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54명 중 4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음. 물체에 맞는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52명 중 3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음.

○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 떨어짐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351명 중 158명이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고 끼임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95명 중 25명이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음. 또한 부딪힘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72명 중 16명이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고 깔림, 뒤집힘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54명 중 26명이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음. 물체에 맞는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52명 중 18명이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음.

[표 2-4] 업무상 사고 사망 규모별 현황

구 분	총계	떨어 짐	넘어 짐	부딪 힘	물체에 맞음	무너 짐	끼임	절단 베임 찢림	감전	폭발 파열	화재	깔림 뒤집 힘
계 (%)	828 (100.00)	351 (42.39)	17 (2.05)	72 (8.70)	52 (6.28)	32 (3.86)	95 (11.47)	5 (0.60)	16 (1.93)	26 (3.14)	18 (2.17)	54 (6.52)
총 계	5인 미만	318	158	3	16	18	25	4	5	11	3	26
	5~9인	120	53	1	14	8	14	0	3	1	1	10
	10~19인	113	44	5	9	5	3	19	0	3	2	6
	20~29인	64	24	1	8	3	1	6	0	3	6	3
	30~49인	55	23	1	6	3	1	9	0	1	2	2
	50~99인	54	17	4	7	4	2	4	0	0	2	4
	100~299인	56	20	1	5	3	4	11	0	0	1	2
	300~499인	14	4	0	4	2	0	2	1	0	0	0
	500~999인	16	4	1	2	3	2	2	0	0	1	0
	1,000인 이상	18	4	0	1	3	0	3	0	1	1	0

구분	이상온도물체접촉	빠짐익사	불균형및무리한동작	화학물질누출접촉	산소결핍	사업내교통사고	사업외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동물상해	기타	분류불능
계 (%)	1 (0.12)	10 (1.21)	0 (0.00)	7 (0.85)	4 (0.48)	5 (0.60)	56 (6.76)	0 (0.00)	0 (0.00)	6 (0.72)	0 (0.00)	1 (0.12)
5인 미만	1	4	0	1	2	0	22	0	0	1	0	0
5~9인	0	1	0	1	1	0	10	0	0	1	0	0
10~19인	0	0	0	1	0	0	10	0	0	3	0	0
20~29인	0	0	0	1	0	0	5	0	0	0	0	0
30~49인	0	1	0	1	0	1	2	0	0	0	0	1
50~99인	0	1	0	0	1	1	3	0	0	0	0	0
100~299인	0	3	0	0	0	1	3	0	0	1	0	0
300~499인	0	0	0	0	0	0	1	0	0	0	0	0
500~999인	0	0	0	0	0	0	0	0	0	0	0	0
1,000인 이상	0	0	0	2	0	2	0	0	0	0	0	0

출처: 고용노동부 2021년 산업재해현황분석

○ 결국,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 사망이 다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더욱 심각한 상황임. 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유해위험 업무 및 공정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업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인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임.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재정적, 인적 한계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절한 지도, 감독 등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임.

2.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산재 실태

○ 최근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에 따르면,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는 약 80만 명이었음. 이는 취업자(15~69세)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21년에 비해 13.4만 명(20.3%) 증가한 수치임. 온라인 플랫폼의 단순 중개·소개, 알선을 통해 일거리(일감)를 구한 종사자까지 포함한 광의의 플랫폼종사자는 약 292만 명으로 2021년에 비해 약 72.2만명(32.9%) 증가하였음.

○ 상기 발표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종사자 중 남성은 590천명으로 74.3%였으며, 여성은 205천명으로 25.7%였음. 연령별로는 40대가 35.3%로 2021년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했음.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배달·배송·운전 직종은 2.2% 증가에 그친 반면, 가사·청소·돌봄 직종(89.3%) 등에서는 종사자가 크게 증가했음.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판단됨. 또한 웹 기반형 플랫폼 직종(미술 등 창작활동,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등), 전문서비스 등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표 2-5] 2021년-2022년 플랫폼 노동자 규모

직종	'21년	'22년	증감률
배달·배송·운전	502	513	2.2
전문서비스 (통·번역·상담 등)	53	85	60.4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31	57	83.9

직종	'21년	'22년	증감률
가사·청소·돌봄	28	53	89.3
미술 등 창작활동	19	36	89.5
IT 관련 서비스	14	17	21.4

출처: 고용노동부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

○ 플랫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법적 지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며, 사회적으로는 오래전부터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우고 있음. 모든 플랫폼노동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하는 일부 직종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음.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삭제 <2011. 1. 24.>
다. 삭제 <2015. 4. 14.>
라.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5의2. 택배사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자

- 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이하 이 조에서 “화물차주”라 한다)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5.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현재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를 아우르는 산재 발생 실태에 대한 공식통계는 없음. 다만, 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직종에 대한 산재 발생 통계를 통해 그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63명이었음. 이는 2021년에 비해 27명 증가한 수치로 그 증가폭이 매우 큼.

○ 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는 퀵서비스기사가 39명(6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기계종사자가 14명(22.2%), 화물차주가 7명(11.1%), 택배기사가 3명(4.8%) 순으로 많았음. 2021년과 비교하면, 퀵서비스기사는 21명, 건설기계종사자는 7명, 택배기사는 2명이 증가했으며, 화물차주는 2명, 대리운전기사는 1명이 감소했음.

[표 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무상 사망 사고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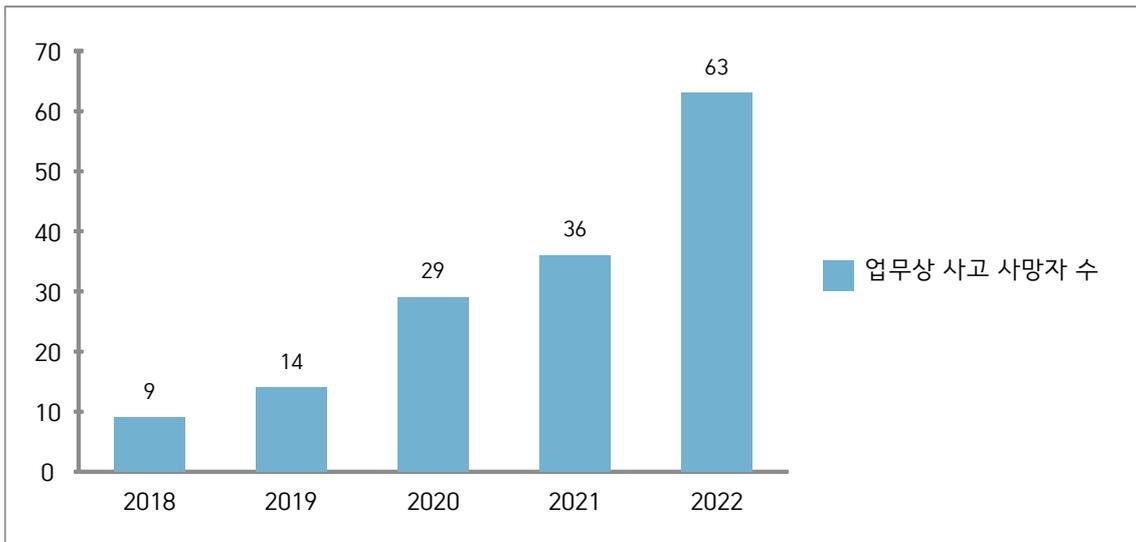
(단위: 명, %, %p)

구분	계	퀵서비스기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2년	63	39	61.9	14	22.2	7	11.1	3	4.8	0	0.0
'21년	36	18	50.0	7	19.4	9	25.0	1	2.8	1	2.8
증감	27	21	11.9	7	2.8	△2	△13.9	2	2	△1	△2.8

출처: 고용노동부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 최근 5년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사고 발생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18년 9명, 2019년 14명, 2020년 29명, 2021년 36명, 2022년 63명으로 그 증가폭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최근 배달 업종 등 플랫폼 노동자 규모의 증가, 산재보험 적용자 수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증가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의 고용 규모를 고용노동부의 감독행정이 제대로 따라잡지 못한 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진단됨.

[그림 2-1] 2018년-2022년 특수고용노동자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 최근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는 여전히 전통적인 근로계약 하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의 감독행정 역시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보호에 집중되어 있음. 이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의 ‘법적, 행정적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음.

3.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정책 수립 및 집행의 필요성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 사각지대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필요성

○ 최근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으로 불리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급증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전통적 근로계약 관계 하에서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보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정책 역시 전통적 근로계약관계에서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에 집중될 수밖에 없음. 이에,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및 감독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재 사망이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부족한 감독행정 역량으로 인해 제대로 된 예방감독 및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현재의 고용노동부 감독행정 역량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독행정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임.

○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정비 및 고용노동부의 역할 강화만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 지자체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 및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사업장, 전통적 근로계약관계 밖에 존재하는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산재예방정책의 마련 및 집행이 시급함.

○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 집행, 예산 투여 등이 가능함. 또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할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접근성 높은 산재예방정책의 집행이 가능함. 이에, 전통적으로 중앙정부 행정사무로 인식되던 산재예방 및 감독 행정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지자체의 산재예방정책은 중앙정부에 비해 다음 두 가지 지점에서 정책적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음. 첫째,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산하 기관, 발주용역 및 공사, 민간위탁 부문 등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음. 둘째, 산재예방 정책 분야 외의 조세, 식품 등에서 각종 인허가 및 기타 권한을 활용하면 민간 부문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음.

○ 다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거두어 들이려면, 고용노동부의 정책의 중복 내지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지자체-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정보 교환과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2)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자체의 책임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는 지자체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3은 지자체가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산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자체가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광역, 기초 지자체가 산재예방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등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있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따라서 지자체 역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할 법적 책임이 있음. 한편, 지자체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역할 외에 관할 지역 내의 민간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 지원해야할 정책적 책임이 있음.

○ 지자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의무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점임. 중대재해처벌법은 지자체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행해야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장 서울시 산재 취약노동자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1) 실태조사 구성 및 조사대상

○ 이번 조사는 서울시 산재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함. 그러하기에, 산재 발생의 조건이 되는 고용상황, 근무실태 및 산재 발생시 대응,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필요성과 관련된 문항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였음.

○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취약 노동자들의 고용현태(종사기간, 사용자 규모, 고용형태), 산재와 관련된 근무실태(주간 근로시간, 주간 야간근로시간, 휴무일), 스트레스 정도 및 요인, 산재 발생 및 대응 실태(사회보험 적용여부, 산재보험 미가입 이유, 민간보험으로 대비여부, 사회보험 지원사업 인지여부, 건강검진 실태, 산재 관련 경험, 최근 산재발생 여부, 산재발생시 치료재원), 산재 관련 안전보호구 구비, 작업도구 정비여부, 서울시 취약노동자 지원제도 인지여부 및 확대·강화 필요성, 산재예방정책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 함.

[표 3-1] 산재 취약 노동자 실태조사 구성 표

구 분	실태조사 문항
인적 속성	성별
	연령

구 분	실태조사 문항
고용상황	종사기간
	사용자 규모
	고용형태
근무실태	1주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무일
	스트레스
산재 발생 및 대응 실태	사회보험, 민간보험, 정부지원사업 인지
	건강검진
	산재 등 관련 교육
	산재 발생 대응
	안전보호구, 작업도구 정비
산재예방정책에 대한 인식	취약 노동자 지원정책 인지/확대강화 필요성
	산재예방정책 필요성

○ 산재 취약 노동자집단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장애인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파견직 노동자, 하청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 있지만, 정책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하청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음.

○ 서울시에서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하청노동자, 파견직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를 설문외 표본으로 하였고, 서울지역 내 플랫폼노동자 직종분포 비율에 대한 자료가 매우 드문 가운데 이에 대한 가장 최근 연구인 김준영 외(2021)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였음.

(2) 실태조사 표본

○ 실태조사 표본 총 149개를 김준영 외(2021)의 ‘서울지역 플랫폼종사자의 직종 분포’ 비율대로 추출하여 구성하였음.

[표 3-2] 설문조사 표본 구성

	직종	서울지역 플랫폼종사자 직종분포 비율(%)	150명 기준 구성인원(명)	설문 인원(명)
1	배달	73.1 ¹⁾	54.8	55
	배송, 운전		54.8	55
2	전문서비스 (번역, 강사, 상담 등)	10.6	15.9	18
3	가사, 청소, 돌봄	4.6	6.9	8
4	미술 등 창작활동	4.1	6.15	7
5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	3.4	5.1	6
	합계	95.8	143.7	149

○ 실태조사 표본의 수집은 해당 직종 노동조합 조합원(배달의 경우 라이더유니온, 배송·운전의 경우 택배노동조합), 해당 직종 종사자 sns 그룹 구성원(전문서비스,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 해당 종사자 개인별 직접 접촉(가사·청소·돌봄, 미술 등 창작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졌음.

1) 배달·배송·운전 직종은 표본의 수집 결과에 따라 (택배)배송, 배달의 두 직종으로 분리하였음.

○ 설문조사 표본의 직종·성별·연령대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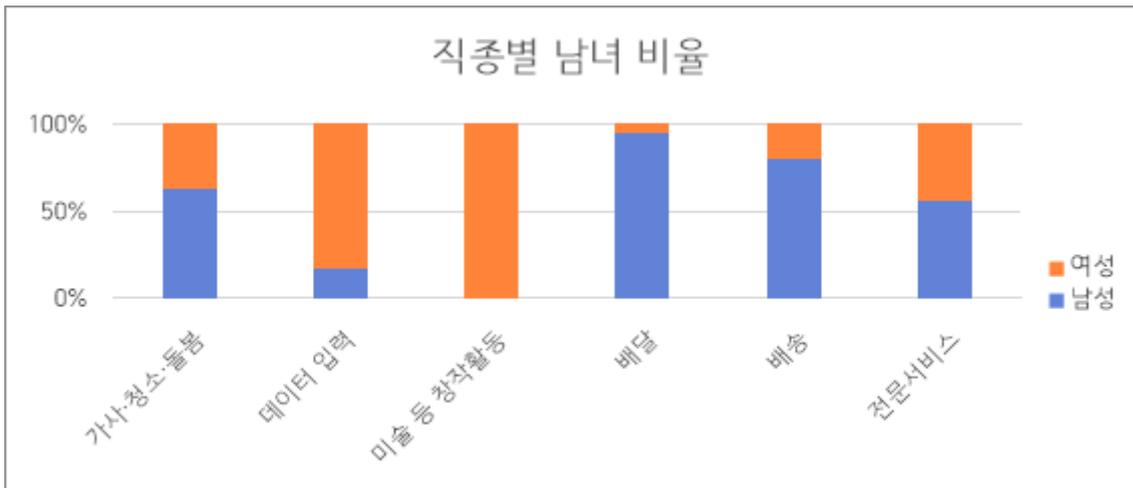
[표 3-3] 전체 설문조사 표본 직종·성별·연령대별 현황

직종	성별	연령대					합계 (명)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가사·청소·돌봄(가사 및 육아도우미, 청소, 간병인, 반려동물돌봄 등)	남		4	1			5
	여	1	1	1			3
단순 작업(데이터입력, 파일 업로드 등 컴퓨터로 하는 단순작업 등)	남		1				1
	여		5				5
미술 등 창작활동(미술, 일러스트레이 터, 디자인, 웹툰, 유튜브 등)	여	2	5				7
	남	3	17	27	5		52
배달	여			2	1		3
	남		10	19	14	1	44
배송	여		5	5	1		11
	남	1	5	3	1		10
전문서비스(통번역·강사·과외·교육·레 슨·여행가이드·상담·인테리어 등)	여	2	2	3	1		8

- 전체 설문조사 표본은 남성이 75.2%, 여성이 24.8% 비율로 구성됨.
- 여성비율은 미술 등 창작활동(미술,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인, 웹툰, 유튜브 등)²⁾(100%),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데이터입력, 파일 업로드 등 컴퓨터로 하는 단순작업 등)³⁾(83.3%), 전문서비스(통번역·강사·과외·교육·레슨·여행가이드·상담·인테리어 등)⁴⁾(44.4%), 가사·청소·돌봄(가사 및 육아도우미, 청소, 간병인, 반려동물돌봄 등)⁵⁾(37.5%), 배송(20.5%), 배달(5.5%) 순으로 높음.

2) 이하 "미술 등 창작활동"이라 함.
 3) 이하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이라 함.
 4) 이하 "전문서비스"라 함.
 5) 이하 "가사·청소·돌봄"이라 함.

[그림 3-1] 플랫폼 종사자 직종별 남녀비율



[표 3-4] 전체 설문조사표본 연령대별 현황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빈도(명)	9	55	61	23	1	149
비율(%)	6.0%	36.9%	40.9%	15.4%	0.7%	100%

- 전체 설문 표본의 연령대 분포 비율은 40대(40.9%), 30대(36.9%), 50대(15.4%), 20대(6.0%), 60대(0.7%) 순임.
- 각 직종별로 가장 높은 비율의 연령대는 가사·청소·돌봄은 30대(63%),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은 30대(100%), 미술 등 창작활동은 30대(71%), 전문서비스는 30대(39%), 배달은 40대(53%), 배송은 40대(44%)임.

[표 3-5] 플랫폼 종사자 직종별 연령대 비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가사·청소·돌봄	빈도(명)	1	5	2	0	0	8
	비율(%)	12.5	62.5	25.0	0.0	0.0	100.0
데이터입력 등	빈도(명)	0	6	0	0	0	6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단순작업	비율(%)	0.0	100.0	0.0	0.0	0.0	100.0
미술 등 창작활동	빈도(명)	2	5				7
	비율(%)	28.6	71.4	0.0	0.0	0.0	100.0
배달	빈도(명)	3	17	29	6	0	55
	비율(%)	5.5	30.9	52.7	10.9	0.0	100.0
배송	빈도(명)	0	15	24	15	1	55
	비율(%)	0.0	27.3	43.6	27.3	1.8	100.0
전문서비스	빈도(명)	3	7	6	2	0	18
	비율(%)	16.7	38.9	33.3	11.1	0.0	100.0

2. 고용현황

(1) 종사기간

○ 전체 설문대상 응답자의 현재 직종 종사기간은 3년 이상(45%)⁶⁾, 2년 이상 3년 미만(18.8%) 및 1년 이상 2년 미만(18.8%), 6개월 이상 1년 이내(8.7%) 및 6개월 이내(8.7%) 순임.

- 최근 전국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이 30개월,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 23.5%⁷⁾이며, 서울지역 정규직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이 남성 6.1년, 여성 5.0년⁸⁾에 비추어 플랫폼종사자들 종사기간이 정규직근로자들보다 짧지만 일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종사기간보다 긴 것으로 보임.

[표 3-6] 전체 설문 응답자 현 직종 종사기간 현황

현재 직종에 종사한 기간	빈도(명)	비율(%)
24년	1	0.7
22년	1	0.7
21년	2	1.3
17년	1	0.7
13년	1	0.7
3년 이상	61	40.9
2년 이상 3년 미만	28	18.8

6) 설문에 3년 이상으로 답한 자는 61명으로 40.9%이나, 기타로 종사기간이 13년 1명, 17년 1명, 21년 2명, 22년 1명, 24년 1명을 모두 합하여 실질적으로 3년 이상 종사자는 총67명(45%)에 이룸.

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08, 2023.02.14, 근로형태별 평균근속기간 및 근속기간별 구성비

8)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20, 2023.02.14,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

현재 직종에 종사한 기간	빈도(명)	비율(%)
1년 이상 2년 미만	28	18.8
6개월 이상 1년 이태	13	8.7
6개월 이내	13	8.7
합계	149	100.0

- 3년 이상 종사자 비율은 직종별로 배송(58.2%), 미술 등 창작활동(57.1%), 배달 (43.6%), 전문서비스(33.3%), 가사·청소·돌봄(12.5%),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0%) 순임. 전통적인 플랫폼사업 직종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배송, 배달 직종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미술 등 창작활동, 전문서비스)도 진입장벽은 높지만 일단 근로를 시작하면 종사기간이 긴 것으로 보임.

[표 3-7] 각 직종별 응답자 현재 직종 종사기간 현황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돌봄		미술등 창작활동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3년 이상	24	43.6	32	58.2	6	33.3	1	12.5	4	57.1	0	0
2년 이상 3년 미만	14	25.5	10	18.2	2	11.1	1	12.5	1	14.3	0	0
1년 이상 2년 미만	9	16.4	7	12.7	5	27.8	3	37.5	0	0	4	66.7
6개월 이상 1년 이내	3	5.5	3	5.5	3	16.7	3	37.5	1	14.3	0	0
6개월 이내	5	9.1	3	5.5	2	11.1	0	0.0	1	14.3	2	33.3
합계	55	100	55	100	18	100%	8	100	7	100	6	100

(2) 플랫폼 업체(위탁사업자 내지 사용자)의 규모

○ 설문대상 응답자가 종사하는 플랫폼업체(위탁사업자 내지 사용자)의 규모는 상시사용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36.9%),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15.9%),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14.1%), 5인 미만 사업장(14.1%),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3.4%) 순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1%임.

- 전체 산업 종사자 조사결과⁹⁾가 5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가 34.6%, 10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가 18.8%,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10.3%로 본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한 데 비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전체 산업조사 종사자 조사결과가 36.3%로 본 설문조사 결과인 14.1%와 큰 차이가 있음. 플랫폼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사업장 규모가 전통적인 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임.

[표 3-8] 전체 설문 응답자 종사하는 플랫폼 업체 규모

	빈도(명)	비율(%)
상시사용근로자 50인 이상	55	36.9
상시사용자 30인 이상 50인 미만	5	3.4
상시사용자 10인 이상 30인 미만	23	15.4
상시사용자 5인 이상 10인 미만	21	14.1
상시사용근로자 5인 미만	21	14.1
잘 모르겠음	24	16.1
합계	149	100

9)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2021, 2023.02.14, 종사자 규모별 조직형태별 종사자 수

○ 직종별 종사 사업장 규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의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등의 기준이 되는 상시사용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비율이 배달(61.8%), 배송(29.1%), 미술 등 창작활동(28.6%), 전문서비스(16.7%) 순임. 이에 반해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가사·청소·돌봄(37.5%), 전문서비스(27.8%), 배송(21.8%), 배달(1.8%), 미술 등 창작활동(0%),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0%) 순임.

[표 3-9] 직종별 응답자 종사 플랫폼업체 규모(상시사용 근로자)

상시사용 근로자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 돌봄		미술등 창작활동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50인이상	16	29.1	34	61.8	3	16.7	0	0.0	2	28.6	0	0.0
30인이상 50인미만	2	3.6	0	0.0	1	5.6	0	0.0	2	28.6	0	0.0
10인이상 30인미만	12	21.8	5	9.1	2	11.1	2	25.0	1	14.3	1	16.7
5인이상 10인미만	11	20.0	1	1.8	5	27.8	3	37.5	1	14.3	0	0.0
5인미만	12	21.8	1	1.8	5	27.8	3	37.5	0	0.0	0	0.0
잘 모르겠음	2	3.6	14	25.5	2	11.1	0	0.0	1	14.3	5	83.3
합계	55	100	55	100	18	100	8	100	7	100	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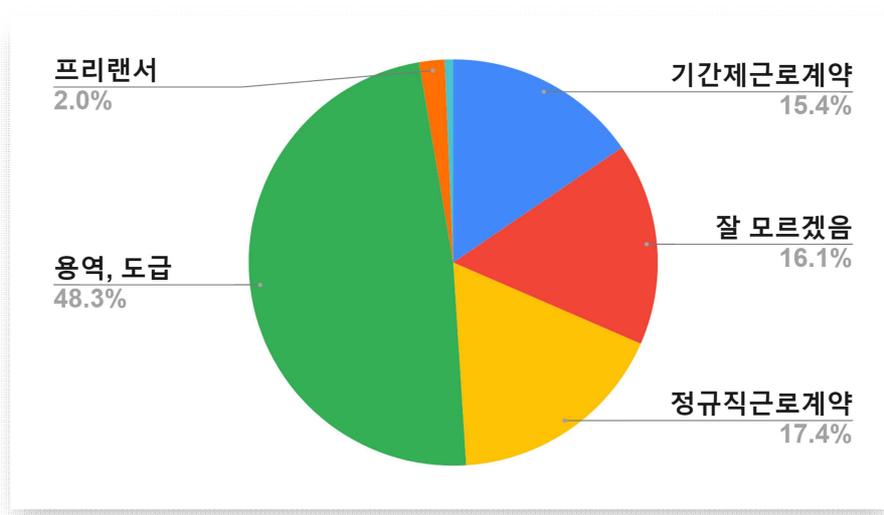
(3) 고용형태

○ 전체 설문 응답자의 고용형태는 용역·도급계약관계가 48.3%, 정규직 근로계약관계가 17.4%, 기간제근로계약관계가 15.4%, 프리랜서가 2%, 파견직이 0.7%이

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6.1%임.

- 정규직 근로계약관계 외에 불안정 고용형태가 최소한 66.5%에 달하는데 이들은 산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2] 전체 설문 응답자 고용형태



○ 각 직종별로는 미술 등 창작활동(71.4%), 전문서비스(38.9%), 배송(21.8%), 가사·청소·돌봄(12.5%), 배달(1.8%),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0%) 순으로 정규직 근로계약관계 비율이 높음.

[표 3-10] 각 직종별 응답자 고용형태 현황

고용형태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돌봄		미술등 창작활동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용역, 도급 계약관계	24	43.6	38	69.1	4	22.2	3	37.5	0	0	3	50.0
프리랜서	1	1.8	0	0.0	0	0.0	0	0.0	2	28.6	1	16.7
파견직	1	1.8	0	0.0	0	0.0	0	0.0	0	0	0	0

고용형태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돌봄		미술등 창작활동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근로계약 (기간제)	15	27.3	2	3.6	4	22.2	1	12.5	0	0	1	16.7
근로계약 (정규직)	12	21.8	1	1.8	7	38.9	1	12.5	5	71.4	0	0
잘 모르겠음	2	3.6	14	25.5	3	16.7	3	37.5	0	0	1	16.7
합계	55	100	55	100	18	100	8	100	7	100	6	100

주: "일정 퍼센트 판매수수료를 플랫폼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응답은 프리랜서로 처리함.

3. 근무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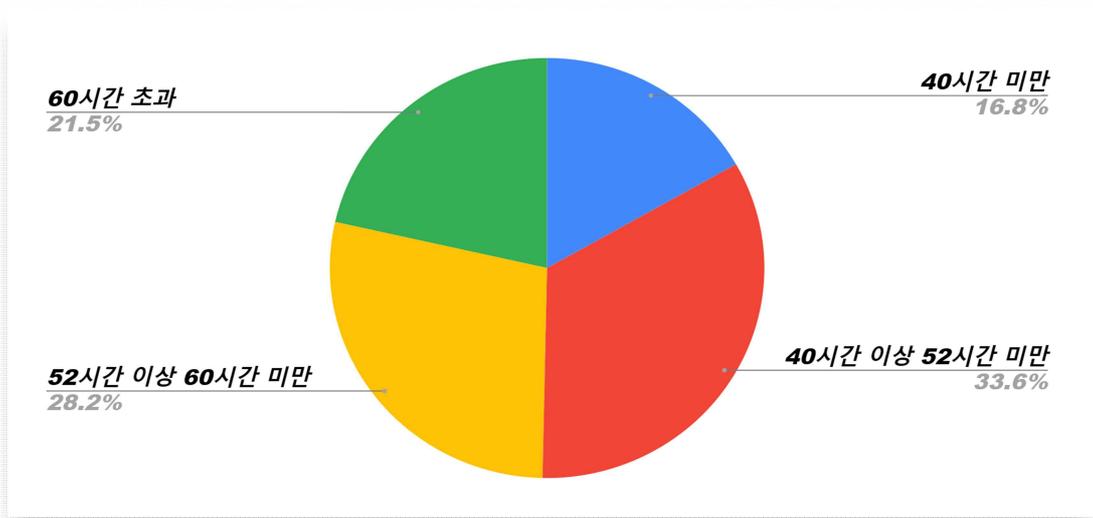
(1) 근무시간

○ 전체 설문 응답자의 최근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 (33.6%),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28.2%), 60시간 초과(21.5%), 40시간 미만 (16.8%) 순임.

-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83.3%로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남.
-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질환·심장질환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2021년)의 만성적 과중한 업무요인으로 업무와 발병 간 강한 관련성을 인정하는 업무시간 기준¹⁰⁾에 해당하는 응답자도 49.7%(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28.2%, 60시간 초과 21.5%)에 이룸.

10) 해당 지침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서 추가적인 업무부담요인이 있으면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 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 강하다고 인정됨.

[그림 3-3] 전체 설문 응답자 1주 평균 근무시간



○직종별로 1주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전문서비스(95.7%), 배달(87.3%), 미술 등 창작활동(85.7%), 배송(78.2%), 가사·청소·돌봄(75.0%),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66.7%) 순으로 많았고, 1주 평균 52시간 이상 근무자는 가사·청소·돌봄(62.5%), 배달(60%), 전문서비스(56.5%), 배송(45.5%),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33.3%), 미술 등 창작활동(14.3%) 순으로 많았음.

[표 3-11] 각 직종별 응답자 1주 평균 근무시간

1주 평균 근무시간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돌봄		미술등 창작활동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60시간 초과	5	9.1	22	40.0	6	26.1	1	12.5	1	14.3	2	33.3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20	36.4	11	20.0	7	30.4	4	50.0	0	0.0	0	0.0
4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	18	32.7	15	27.3	9	39.1	1	12.5	5	71.4	2	33.3

1주 평균 근무시간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돌봄		미술등 창작활동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40시간 미만	12	21.8	7	12.7	1	4.3	2	25.0	1	14.3	2	33.3
합계	55	100	55	100	23	100	8	100	7	100	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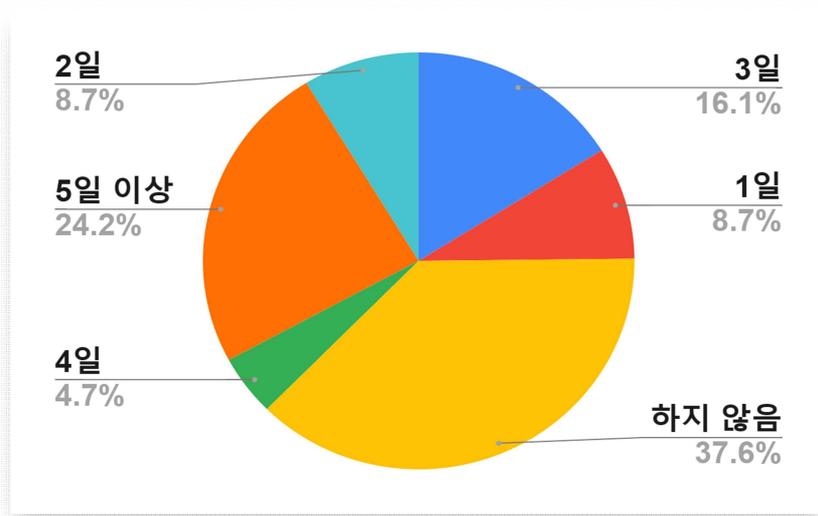
(2) 야간근무

○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암연구소(IARC)가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2021년)에서 뇌혈관·심장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업무시간 평가시 야간근무에 대해 30%를 가중하고 있으므로 야간근무시간은 산재 취약성을 판단할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전체 설문 응답자의 1주 평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일수에 대해 5일 이상(24.2%), 3일(16.1%), 2일(8.7%), 1일(8.7%), 4일(4.7%)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37.6%는 야간근무를 하지 않음. 야간노동시간대별 분포가 장시간(8시간 이상), 단시간(2시간 미만)의 양 극단에 분포하는 통계조사결과¹¹⁾와 유사하게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 응답자(5일 이상 24.2%, 3일 이상 16.1%)와 전혀 하지 않는 응답자(37.6%)의 양 극단으로 응답분포가 나타났음.

11) 이승렬, "통계로 본 야간노동: 밤 근무, 생활 그리고 건강", 「월간 노동리뷰」, 2020년:5월호:24

[그림 3-4] 전체 설문 응답자 1주 평균 야간근무일수



○ 전체 직종 중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이 1주 평균 야간근무일수가 5일 이상 50%, 3일은 16.7%, 배달이 5일 이상은 40%, 4일은 3.6%, 3일은 18.2%로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 직종이고,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미술 등 창작활동이 57.1%, 가사·청소·돌봄이 50%, 배송이 45.5%로 나타나 야간근무를 많이 하지 않는 편에 속하는 직종임.

[표 3-12] 직종별 1주 평균 야간근무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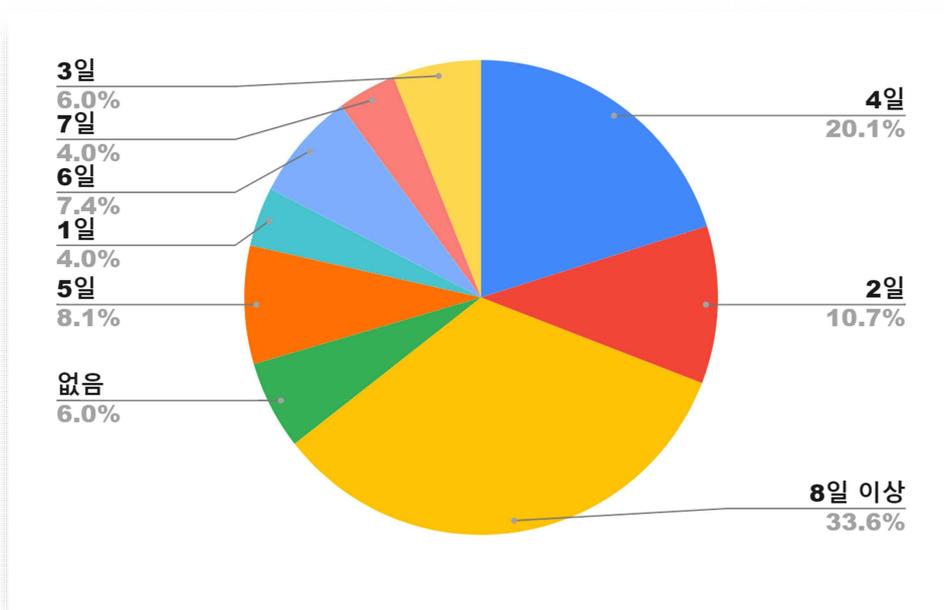
1주 평균 야간근무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돌봄		미술등 창작활동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5일 이상	9	16.4	22	40.0	2	11.1	0	0.0	0	0.0	3	50.0
4일	2	3.6	2	3.6	1	5.6	1	12.5	1	14.3	0	0.0
3일	7	12.7	10	18.2	5	27.8	1	12.5	0	0.0	1	16.7
2일	5	9.1	3	5.5	1	5.6	2	25.0	2	28.6	0	0.0
1일	7	12.7	1	1.8	5	27.8	0	0.0	0	0.0	0	0.0

1주 평균 야간근무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 돌봄		미술등 창작활동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하지않음	25	45.5	17	30.9	4	22.2	4	50.0	4	57.1	2	33.3
합계	55	100	55	100	18	100	8	100	7	100	6	100

(3) 휴무일

○ 전체 설문 응답자의 1개월 동안 휴무일수는 8일 이상(33.6%), 4일(20.1%), 2일(10.7%), 5일(8.1%), 6일(7.4%), 3일(6.0%), 없음(6.0%), 7일(4.0%), 1일(4.0%) 순임. 매주 1회 이상 휴무하는 응답이 과반을 넘지만, 전혀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그림 3-5] 전체 설문 응답자 1개월 동안 휴무일수



○ 전체 직종 중 가사·청소·돌봄, 미술 등 창작활동 직종이 각 75%, 71.4%가 1개월 동안 8일 이상 휴무하여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직종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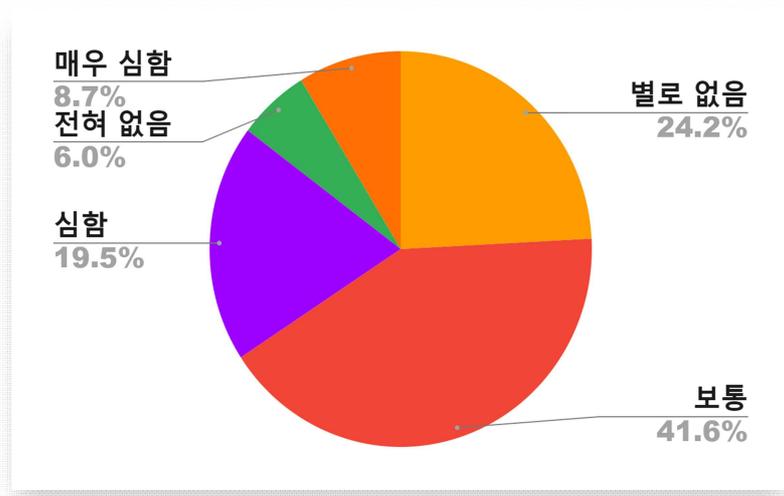
[표 3-13] 직종별 1개월 동안 휴무일수

휴무일수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돌봄		미술등 창작활동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8일 이상	19	34.5	10	18.2	9	50.0	6	75.0	5	71.4	1	16.7
7일	3	5.5	2	3.6	1	5.6	0	0.0	0	0.0	0	0.0
6일	4	7.3	6	10.9	1	5.6	0	0.0	0	0.0	0	0.0
5일	3	5.5	5	9.1	3	16.7	0	0.0	0	0.0	1	16.7
4일	15	27.3	12	21.8	0	0.0	0	0.0	1	14.3	2	33.3
3일	2	3.6	5	9.1	1	5.6	1	12.5	0	0.0	0	0.0
2일	7	12.7	7	12.7	2	11.1	0	0.0	0	0.0	0	0.0
1일	1	1.8	5	9.1	0	0.0	0	0.0	0	0.0	0	0.0
없음	1	1.8	3	5.5	1	5.6	1	12.5	1	14.3	2	33.3
합계	55	100	55	100	18	100	8	100	7	100	6	100

(4) 스트레스

○ 전체 설문 응답자는 일할 때 고객의 갑질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보통 정도(41.6%), 별로 없음(24.2%), 심함(19.5%), 매우 심함(8.7%), 전혀 없음(6.0%) 순으로 응답함. 69.8%가 보통 이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

[그림 3-6] 전체 설문 응답자의 고객 갑질 스트레스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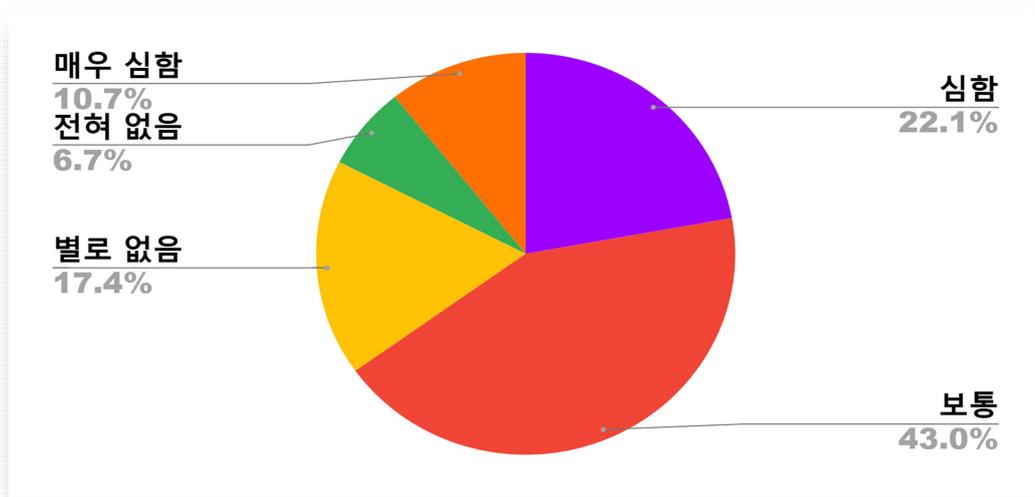
○ 직종별로 고객의 갑질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심함 이상(매우 심함 포함)인 경우가 배송(40.0%), 미술 등 창작활동(28.6%), 배달(27.3%), 가사·청소·돌봄(12.5%), 전문서비스(11%) 순으로 나타나 배송이 스트레스 정도가 타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음.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의 경우 고객과 직접 접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고객의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음.

[표 3-14] 직종별 고객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정도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돌봄		미술등 창작활동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매우심함	4	7.3	9	16.4	0	0.0	0	0.0	0	0.0	0	0.0
심함	18	32.7	6	10.9	2	11.1	1	12.5	2	28.6	0	0.0
보통	23	41.8	28	50.9	5	27.8	2	25.0	3	42.9	1	16.7
별로없음	9	16.4	12	21.8	7	38.9	4	50.0	1	14.3	3	50.0
전혀없음	1	1.8	0	0.0	4	22.2	1	12.5	1	14.3	2	33.3
합계	55	100	55	100	18	100	8	100	7	100	6	100

○ 전체 설문 응답자는 플랫폼 업체(위탁업체, 사용자 등)의 갑질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보통 정도(43.0%), 심함(22.1%), 별로 없음(17.4%), 매우 심함(10.7%), 전혀 없음(6.7%) 순으로 응답함. 75.9%가 보통 이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 업무 중 고객보다 상대적으로 플랫폼 업체로부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임.

[그림 3-7] 전체 설문 응답자의 플랫폼업체 갑질 스트레스 정도



○ 직종별로 플랫폼업체의 갑질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심함 이상(매우 심함 포함)인 경우가 미술 등 창작활동(42.9%), 배달(41.8%), 데이터입력 등 단순 작업(33.3%), 배송(32.7%), 전문서비스(16.7%), 가사·청소·돌봄(0%) 순임. 가사·청소·돌봄이 상대적으로 플랫폼업체로부터 스트레스가 적음.

[표 3-15] 직종별 플랫폼업체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정도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돌봄		미술등 창작활동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심함	3	5.5	12	21.8	0	0.0	0	0.0	1	14.3	0	0.0
심함	15	27.3	11	20.0	3	16.7	0	0.0	2	28.6	2	33.3
보통	26	47.3	24	43.6	7	38.9	4	50.0	2	28.6	1	16.7
별로없음	7	12.7	8	14.5	5	27.8	3	37.5	1	14.3	2	33.3
전혀없음	4	7.3	0	0.0	3	16.7	1	12.5	1	14.3	1	16.7
합계	55	100	55	100	18	100	8	100	7	100	6	100

○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질문(문항 10-1)에 대한 응답은 단일한 종류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타 응답(21.9%) 외에, 고객 갑질(19.2%), 플랫폼업체로 인한 스트레스(13.7%), 육체적 스트레스(13.7%), 작업시간 압박(11.0%), 보수(수수료 단가)(6.8%), 폭언·하대 등 언어적 스트레스(5.5%), 작업방식(5.5%), 직장 내 괴롭힘·갑질(2.7%) 관련한 원인 순으로 답함.

[표 3-16] 스트레스의 구체적 원인

스트레스 원인	빈도(명)	비율(%)
기타	16	21.9
고객 갑질	14	19.2
육체적 스트레스	10	13.7
기타 플랫폼업체로 인한 스트레스	10	13.7
작업시간압박	8	11.0
보수(수수료 단가)	5	6.8
언어적 스트레스	4	5.5

스트레스 원인	빈도(명)	비율(%)
작업방식	4	5.5
직장 내 괴롭힘.갑질	2	2.7
합계	73	100

주: 기타에는 강박불안, 커뮤니케이션 문제, 분실문제, 파파라치, 상사의 업무미숙, 분류
알바 공급 문제, 인간관계 등이 있음.

4. 산재 발생 및 대응 실태

(1) 사회보험 가입여부 및 산재보험 미가입 원인

○ 전체 설문 응답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73.2%, 산재보험 가입자는 76.5%, 플랫폼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6.8%, 플랫폼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2.8%임. 통상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커서 상대적으로 직장가입자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표 3-17] 전체 설문 응답자 사회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가입 / 직장가입자	109	73.2	114	76.5	40	26.8	34	22.8
미가입 / 지역가입자	40	26.8	35	23.5	109	73.2	115	77.2
합계	149	100	149	100	149	100	149	100

○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배달(94.5%), 가사·청소·돌봄(75%), 전문서비스(72.2%), 미술 등 창작활동(71.4%), 배송(69.1%),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0%)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8] 직종별 산재보험 가입율

산재보험 가입여부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돌 봄		미술등 창작활동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가입	38	69.1	52	94.5	13	72.2	6	75.0	5	71.4	0	0.0
미가입	17	30.9	3	5.5	5	27.8	2	25.0	2	28.6	6	100.0
합계	55	100	55	100	18	100	8	100	7	100	6	100

○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응답자의 미가입 이유는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모른다(정보부족)(34.3%), 보험료가 부담된다(28.6%), 플랫폼 사업장에서 가입을 반대(20%), 프리랜서(5.7%), 재택근무(5.7%), 기타(5.7%)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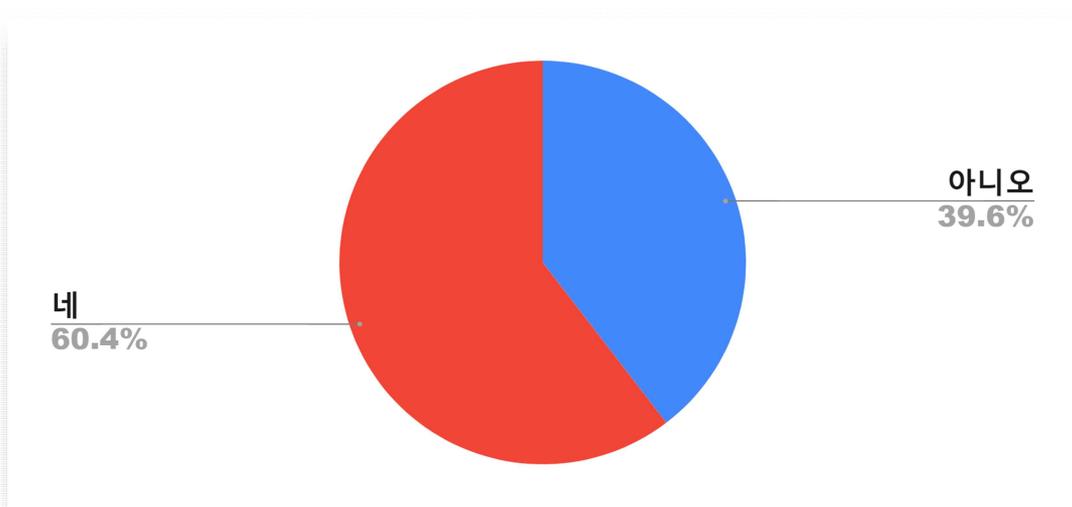
[표 3-19] 산재보험 미가입 이유

미가입 이유	빈도(명)	비율(%)
정보부족	12	34.3
보험료 부담	10	28.6
플랫폼사업장 가입반대	7	20.0
프리랜서	2	5.7
기타	2	5.7
재택근무	2	5.7
합계	35	100.0

(2) 업무상 사고·질병 대비 민간보험 가입여부 및 사회보험 관련 지자체 지원사업 인지 여부

○ 전체 설문 응답자 중 60.4%는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해 산재보험 외에 민간보험을 가입하여 대비하고 있음. 이 때 민간보험은 자동차, 오토바이 등 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제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상당히 많은 비율(60.4%)로 산재보험 외에도 민간보험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 두텁게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3-8] 업무상 재해에 대비 산재보험 외에 민간보험 가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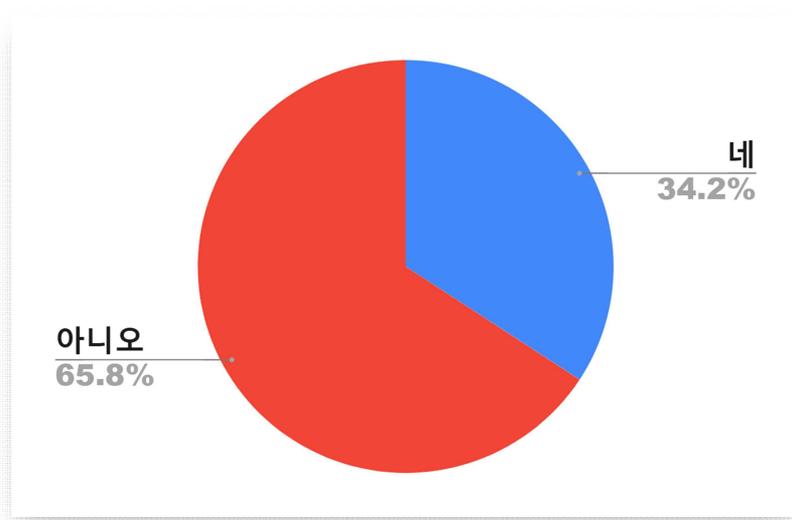
○ 직종별로는 미술 등 창작활동(28.6%)과 데이터 입력(50%)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민간보험을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업무상 재해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3-20] 직종별 업무상 재해에 대비 산재보험 외에 민간보험 가입 여부

민간보험 가입여부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돌 봄		미술등 창작활동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가입	34	61.8	34	61.8	12	66.7	5	62.5	2	28.6	3	50.0
미가입	21	38.2	21	38.2	6	33.3	3	37.5	5	71.4	3	50.0
합계	55	100	55	100	18	100	8	100	7	100	6	100

○ 전체 설문 응답자 중 34.2%만 사회보험 관련 보험료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을 인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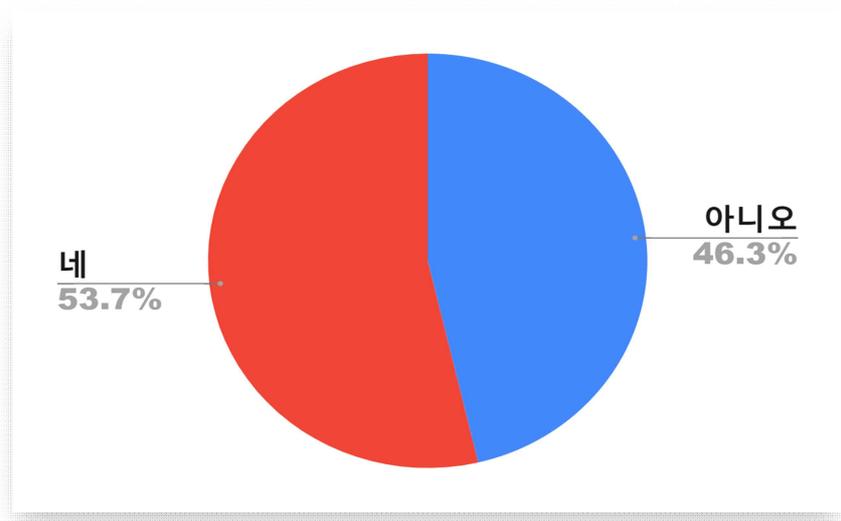
[그림 3-9] 4대보험 보험료 지원 등 지자체 지원사업 인지 여부



(3) 건강검진 수검률 및 미수검 이유

○ 전체 설문 응답자 중 53.7%만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고 답했음. 2021년 서울시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72.4%(남자 71.5%, 여자 73.2%)¹²⁾인 것에 비해 설문 응답한 플랫폼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3-10]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지 여부



○ 직종별로 매년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문서비스(83.7%), 배송(67.3%), 미술 등 창작활동(57.1%), 가사·청소·돌봄(37.5%), 배달(34.5%),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33.3%) 순임. 가사·청소·돌봄(37.5%), 배달(34.5%),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33.3%)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검률이 낮음.

12) 서울특별시, 「건강검진통계」, 2021, 2023-01-09,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표 3-21] 직종별 건강검진 수검률

민간보험 가입여부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돌 봄		미술등 창작활동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가입	37	67.3	19	34.5	15	83.3	3	37.5	4	57.1	2	33.3
미가입	18	32.7	36	65.5	3	16.7	5	62.5	3	42.9	4	66.7
합계	55	100	55	100	18	100	8	100	7	100	6	100

○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 69명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4명), 대체인력이 없어서 휴무를 할 수 없어서(12명),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10명), 검진시간에 별 수 있는 수입이 아까워서(7명), 대체인력이 없어 휴무를 할 수 없어서 및 검진시간에 별 수 있는 수입이 아까워서(6명), 필요성을 못 느껴서 및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4명), 검진시간에 별 수 있는 수입이 아까워서 및 필요성을 못 느껴서(3명), 검진시간에 별 수 있는 수입이 아까워서 및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2명), 기타(2명), 검진시간에 별 수 있는 수입이 아까워서 · 필요성을 못 느껴서 ·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1명),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 및 검진을 위한 지원이 전혀 없어서(1명), 대체인력이 없어 휴무를 할 수 없어서 및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1명) 순으로 응답함.

[표 3-22]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 않은 이유

미검진 이유	빈도(명)
필요성을 못 느껴서	14
대체인력이 없어 휴무를 할 수 없어서	12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	10
검진시간에 별 수 있는 수입이 아까워서	7
대체인력이 없어 휴무를 할 수 없어서, 검진시간에 별 수 있는 수입이 아까워서	6
지역가입자로 2년에 한 번 검진 받음	6
필요성을 못 느껴서,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	4
검진시간에 별 수 있는 수입이 아까워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3
검진시간에 별 수 있는 수입이 아까워서,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	2
기타	2
검진시간에 별 수 있는 수입이 아까워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	1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 검진을 위한 지원이 전혀 없어서	1
대체인력이 없어 휴무를 할 수 없어서,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	1
합계	69

(4) 산업안전 관련 교육의 경험

○ 전체 설문 응답자 중 산업안전 관련하여 지금까지 받아본 교육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도로교통 관련 법령 교육(20.1%), 산업안전교육(17.4%), 산재·산재보험 및 지원등에 관한 교육(14.8%), 산업안전교육·도로교통 관련 법령 교육

(14.8%), 산재· 산재보험 및 지원등에 관한 교육· 산업안전교육(10.1%), 산재· 산재보험 및 지원등에 관한 교육· 산업안전교육· 도로교통 관련 법령 교육 (9.4%), 없음(9.4), 산재· 산재보험 및 지원등에 관한 교육· 도로교통 관련 법령 교육(3.4%), 배민교육(0.7%) 순으로 답함¹³⁾

[표 3-23] 산업안전 관련하여 지금까지 받아본 교육

교육의 종류	빈도(명)	비율(%)
도로교통 관련 법령 교육	30	20.1
산업안전교육	26	17.4
산재, 산재보험 및 지원 등에 관한 교육	22	14.8
산업안전교육, 도로교통 관련 법령 교육	22	14.8
산재, 산재보험 및 지원 등에 관한 교육, 산업안전교육	15	10.1
산재, 산재보험 및 지원 등에 관한 교육, 산업안전교육, 도로교통 관련 법령 교육	14	9.4
산재, 산재보험 및 지원 등에 관한 교육, 도로교통 관련 법령 교육	5	3.4
없음	14	9.4
기타(배민교육)	1	0.7
합계	149	100

○ 직종별로 교육받은 경험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의 경우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응답자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산업안전교육(다른 교육과 중복응답한 경우 포함)을 받은 경험은 미술 등 창작 활동(71.4%), 배송(54.5%), 배달(54.5%), 전문서비스(50%), 가사·청소·돌봄

13) 중복응답 가능함

(37.5%),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0%) 순으로 미술 등 창작활동이 제일 높음.

- 산재, 산재보험 및 지원 등에 관한 교육(다른 교육과 중복응답한 경우 포함)을 받은 경험은 배송(50.9%), 가사·청소·돌봄(37.5%), 배달(30.9%), 미술 등 창작활동(28.6%), 전문서비스(27.8%),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16.7%) 순으로 배송이 제일 높음.
- 도로교통 관련 법령 교육(다른 교육과 중복응답한 경우 포함)을 받은 경험은 배달(70.9%), 가사·청소·돌봄(62.5%), 배송(36.4%), 전문서비스(27.8%),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16.7%), 미술 등 창작활동(14.3%) 순임. 자동차·오토바이를 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이 가장 높게(70.9%) 나타났으나, 배송은 상대적으로 낮게(36.4%) 나타남.

[표 3-24] 직종별 산업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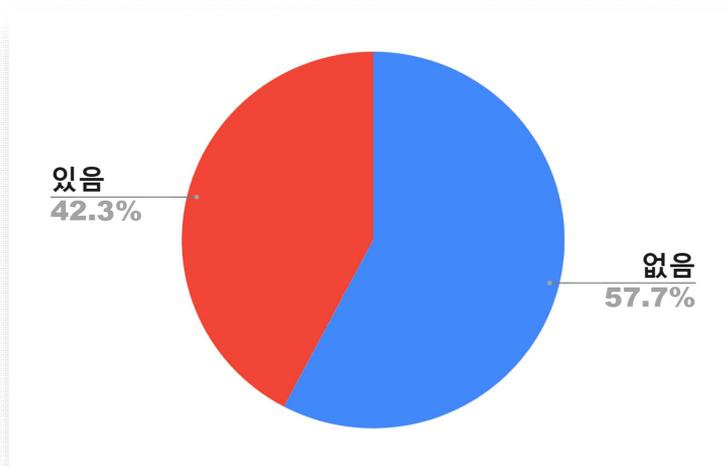
휴무일수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돌봄		미술등 창작활동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도로교통 관련 법령 교육	7	12.7	17	30.9	2	11.1	2	25.0	1	14.3	1	16.7
산업안전교육	10	18.2	7	12.7	5	27.8	1	12.5	3	42.9	0	0.0
산재, 산재보험 및 지원 등에 관한 교육	11	20.0	5	9.1	3	16.7	2	25.0	0	0.0	1	16.7
산업안전교육, 도로교통 관련 법령 교육	6	10.9	12	21.8	2	11.1	2	25.0	0	0.0	0	0.0
산재, 산재보험 및 지원 등에 관한 교육, 산업안전교육	10	18.2	2	3.6	1	5.6	0	0.0	2	28.6	0	0.0
산재, 산재보험 및 지원 등에 관한 교육, 산업안전교육, 도로교통 관련	4	7.3	9	16.4	1	5.6	0	0.0	0	0.0	0	0.0

휴무일수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돌봄		미술등 창작활동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법령교육												
산재, 산재보험 및 지원 등에 관한 교육, 도로교통 관련 법령교육	3	5.5	1	1.8	0	0.0	1	12.5	0	0.0	0	0.0
없음	4	7.3	1	1.8	4	22.2	0	0.0	1	14.3	4	66.7
기타(배민교육)	0	0.0	1	1.8	0	0.0	0	0.0	0	0.0	0	0.0
합계	55	100	55	100	18	100	8	100	7	100	6	100

(5) 산재 발생 경험 및 요양의 재원

○ 전체 설문 응답자 중 지난 1년 동안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2.3%로 나타남.

[그림 3-11] 최근 1년 동안 업무로 인한 부상·질병 발생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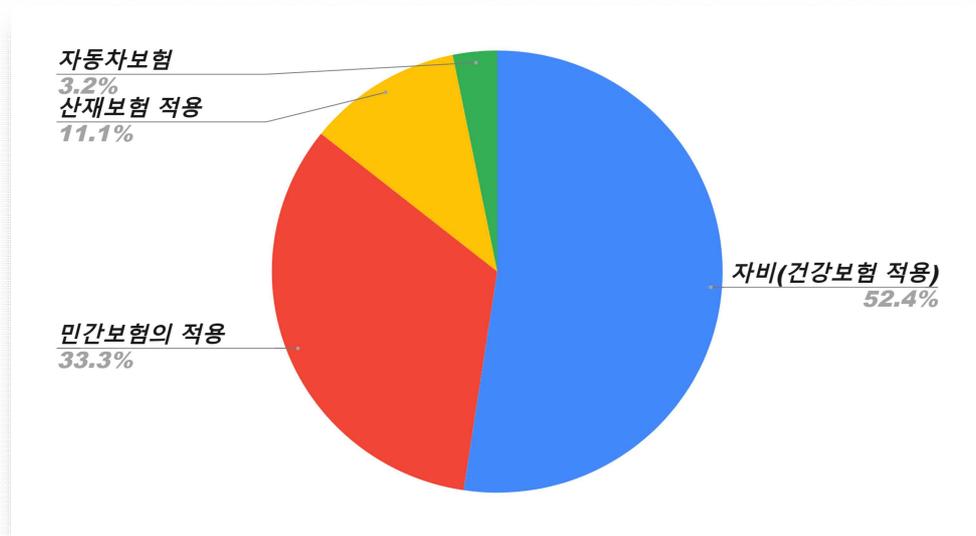
○ 직종별로 지난 1년 동안 배달이 60%로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타 직종은 30% 안팎으로 산재가 발생했음.

[표 3-25] 최근 1년 동안 업무로 인한 부상·질병 발생 경험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돌봄		미술등 창작활동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있음	18	32.7	33	60.0	6	33.3	2	25.0	2	28.6	2	33.3
없음	37	67.3	22	40.0	12	66.7	6	75.0	5	71.4	4	66.7
합계	55	100	55	100	18	100	8	100	7	100	6	100

○ 산재 발생시 치료 재원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해서 자비만으로 치료함(52.4%), 민간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료함(33.3%),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료함(11.1%), 자동차 보험(3.2%) 순으로 답함.

[그림 3-12] 산재 발생 시 치료 재원



○ 직종별로 산재 발생시 치료 재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다고 응답한 직종은 전문서비스(33.3%), 배달(12.1%), 배송(5.3%) 뿐임. 그 외에는 민간보험이나 자비로만 치료를 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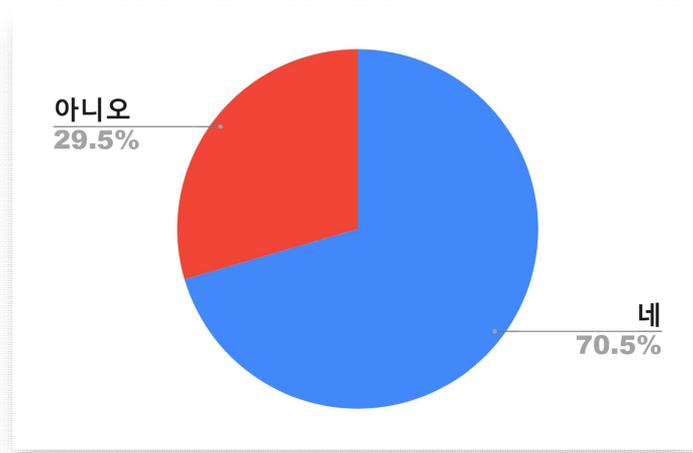
[표 3-26] 직종별 산재 치료 재원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돌봄		미술등 창작활동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산재보험의 적용	1	5.6	4	12.1	2	33.3	0	0.0	0	0.0	0	0.0
민간보험의 적용	9	50.0	11	33.3	0	0.0	1	50.0	0	0.0	0	0.0
자비(건강 보험포함) 만으로	8	44.4	16	48.5	4	66.7	1	50.0	2	100	2	100
기타(자동차보험)	0	0.0	2	6.1	0	0.0	0	0.0	0	0.0	0	0.0
합계	18	100	33	100	6	100	2	100	2	100	2	100

(6) 안전보호구 사용실태

○ 업무 중 헬멧, 무릎·손목보호구, 장갑 등 안전보호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70.5%가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이 중 실제 업무 중 안전보호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83.8%가 사용하고 있다고 답함. 그리고 안전보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비용부담 주체는 자비(90.9%), 플랫폼 업체 등 사업장(9.1%) 순임.

[그림 3-13] 안전보호구 사용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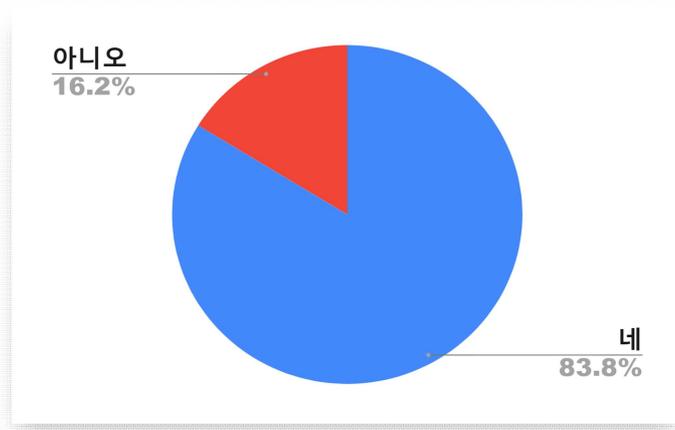
○ 업무 중 안전보호구 사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배달(96.4%), 가사·청소·돌봄(75%), 배송(72.7%), 전문서비스(33.3%),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0%), 미술 등 창작활동(0%) 순임.

[표 3-27] 직종별 안전보호구 사용필요성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돌봄		미술등 창작활동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네	40	72.7	53	96.4	6	33.3	6	75.0	0	0.0	0	0.0
아니오	15	27.3	2	3.6	12	66.7	2	25.0	7	100	6	100
합계	55	100	55	100	18	100	8	100	7	100	6	100

○ 안전보호구 사용이 필요하다는 응답 중 실제 사용한다는 응답은 배달(96.2%), 가사·청소·돌봄(83.3%), 배송(72.5%), 전문서비스(50%)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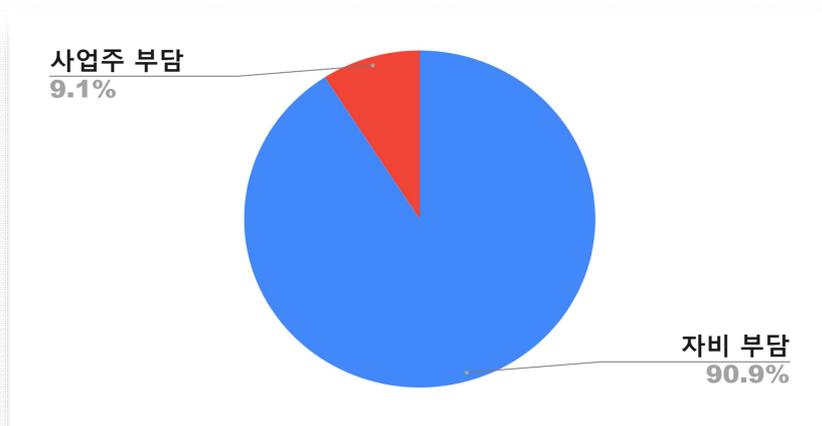
[그림 3-14] (안전보호구가 필요하다는 응답 중) 실제 안전보호구 사용여부



[표 3-28] 직종별 ((안전보호구가 필요하다는 응답 중) 안전보호구 사용여부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돌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사용	29	72.5	51	96.2	3	50.0	5	83.3
사용하지 않음	11	27.5	2	3.8	3	50.0	1	16.7
합계	40	100	53	100	6	100	6	100

[그림 3-15] 안전보호구 비용부담 주체



○ 안전보호구 사용하는 응답자 중 그 비용을 사업장(플랫폼업체 등)이 부담하는 비율은 전문서비스(66.7%), 가사·청소·돌봄(40.0%), 배달(40.0%), 배송(10.3%), 전문서비스(2%)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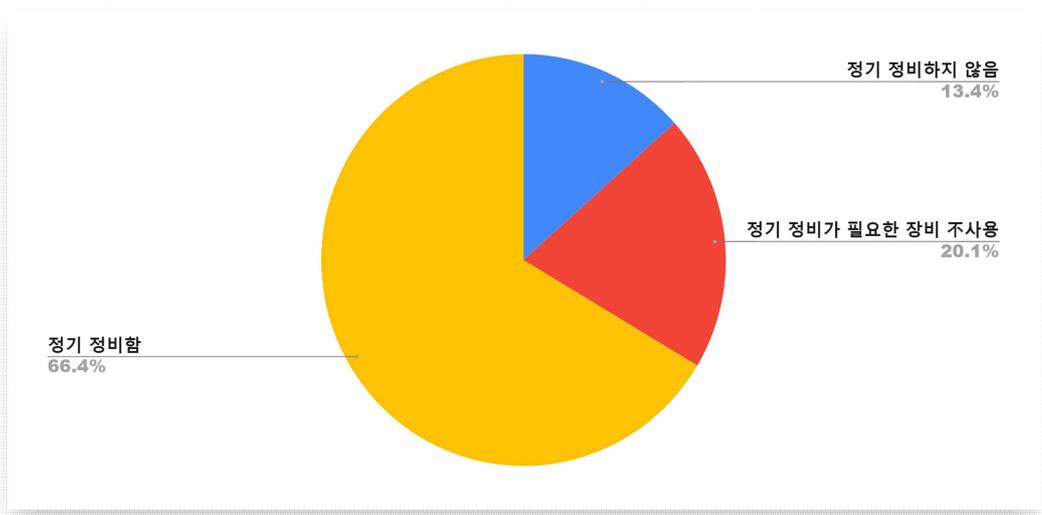
[표 3-29] 직종별 안전보호구 비용부담 주체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돌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자비부담	26	89.7	50	98.0	1	33.3	3	60.0
사업주(플랫폼 업체등) 부담	3	10.3	1	2.0	2	66.7	2	40.0
합계	29	100	51	100	3	100	5	100

(7) 작업도구 사용실태

○ 오토바이, 택배차량 등 작업도구를 정기적으로 정비하는지에 대해 66.4%가 정기적으로 정비한다고 했고, 안전과 관련된 정기적 정비가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20.1%, 정기적으로 정비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13.4%임.

[그림 3-16] 작업도구를 정기적으로 정비하는지 여부



○ 직종별로 오토바이, 택배차량 등 작업도구를 정기적으로 정비한다는 응답은 배달(92.7%), 배송(63.6%), 가사·청소·돌봄(62.5%), 전문서비스(44.4%) 순으로 높았음. 미술 등 창작활동과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은 안전과 관련되어 정기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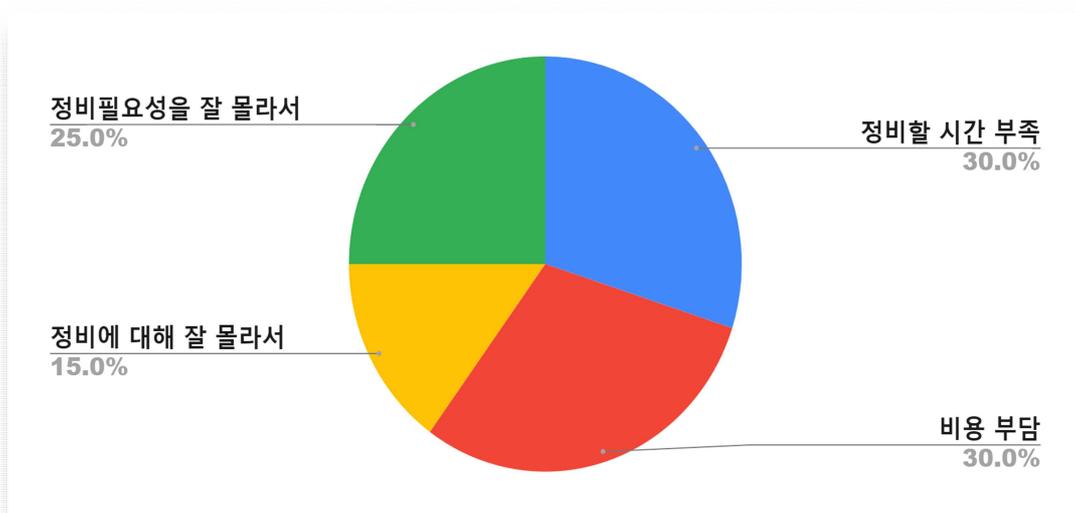
[표 3-30] 직종별 작업도구 정기정비 현황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돌봄		미술등 창작활동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정기정비함	35	63.6	51	92.7	8	44.4	5	62.5	0	0.0	0	0.0
정기정비하지않음	13	23.6	3	5.5	3	16.7	1	12.5	0	0.0	0	0.0
안전관련 정기정비 필요장비 사용안함	7	12.7	1	1.8	7	38.9	2	25.0	7	100	6	100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돌봄		미술등 창작활동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합계	55	100	55	100	18	100	8	100	7	100	6	100

○ 작업도구를 정기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이유는 정비할 시간이 없어서(30%),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30%), 정비할 필요성을 잘 몰라서(25%), 정비에 대해 잘 몰라서(15%) 순임.

[그림 3-17] 작업도구를 정기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이유



○ 직종별로 안전과 관련된 작업도구를 정기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답함.

- 배송은 정비할 시간이 없어서(46.2%),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30.8%), 정비할 필요성을 잘 몰라서(15.4%), 정비에 대해 잘 몰라서(7.7%) 순임.

- 배달은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66.7%), 정비할 필요성을 잘 몰라서(33.3%) 순임.
- 전문서비스는 정비할 필요성을 잘 몰라서(66.7%), 정비에 대해 잘 몰라서 (33.3%) 순임.
- 가사·청소·돌봄은 전부 정비에 대해 잘 몰라서(100%)라 답함.

[표 3-31] 직종별 안전 관련한 작업도구를 정기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이유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돌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정비할 시간이 없어서	6	46.2	0	0.0	0	0.0	0	0.0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4	30.8	2	66.7	0	0.0	0	0.0
정비에 대해 잘 몰라서	1	7.7	0	0.0	1	33.3	1	100
정비할 필요성을 잘 몰라서	2	15.4	1	33.3	2	66.7	0	0.0
합계	13	100	3	100	3	100	1	100

5. 취약노동자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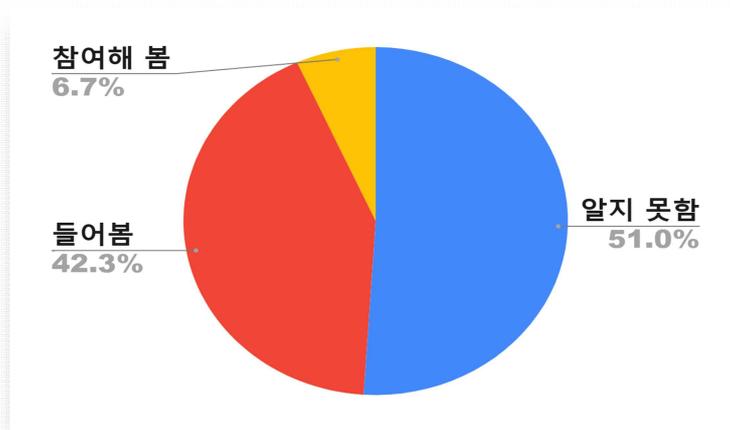
(1) 취약노동자 지원정책에 대한 경험 또는 인지도

[표 3-32] 전체 응답자의 취약노동자 지원정책에 대한 경험 또는 인지도

	유급병가	휴가비지원	노동자쉼터	영세택배사 업장 휴게시설 지원	감정노동종 사자 심리상담·치 유 지원	배달노동자 상해보험지 원
들어봤다	42.3%	40.3%	57.7%	29.5%	49%	40.9%
참여해봤다	6.7%	7.4%	12.8%	4.0%	4.7%	3.4%
알지못한다	51.0%	52.3%	29.5%	66.4%	46.3%	55.7%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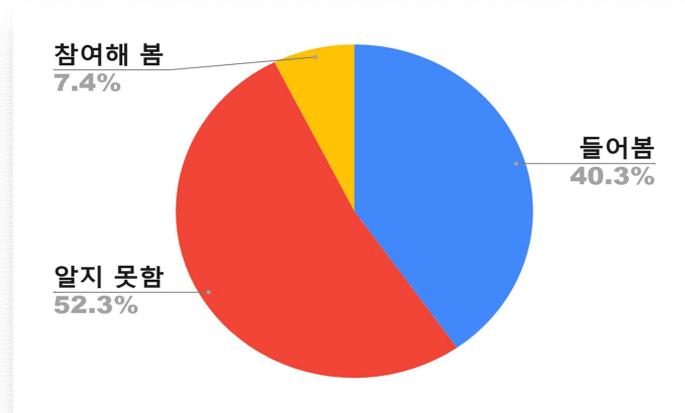
○ 전체 설문 응답자 중 유급병가 지원정책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51%, 들어봤다는 응답이 42.3%, 참여해봤다는 응답이 6.7%로 나타남.

[그림 3-18] 유급병가 지원 정책 경험 또는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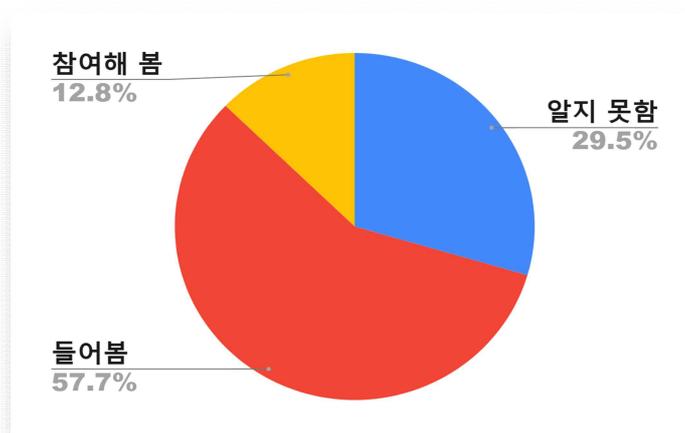
○ 전체 설문 응답자 중 휴가비(여행바우처) 지원정책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52.3%, 들어봤다는 응답이 40.3%, 참여해봤다는 응답이 7.4%로 나타남.

[그림 3-19] 휴가비(여행바우처) 지원 정책 경험 또는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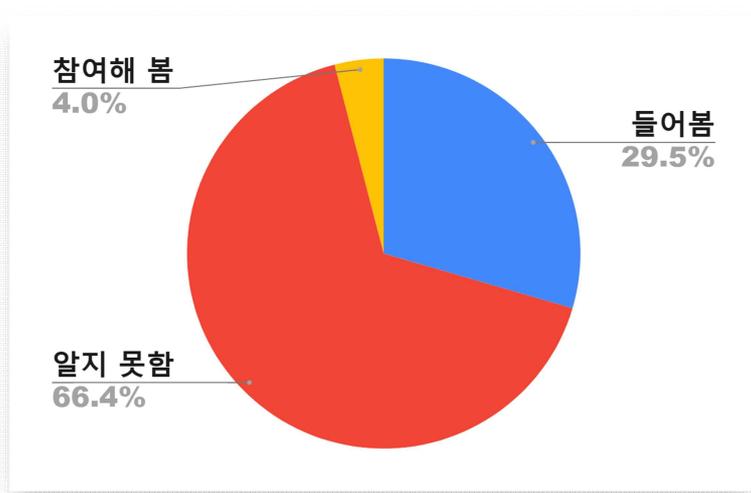
○ 전체 설문 응답자 중 노동자 쉼터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는 응답이 57.7%,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29.5%, 참여해봤다는 응답이 12.8%로 나타남.

[그림 3-20] 노동자 쉼터 정책 경험 또는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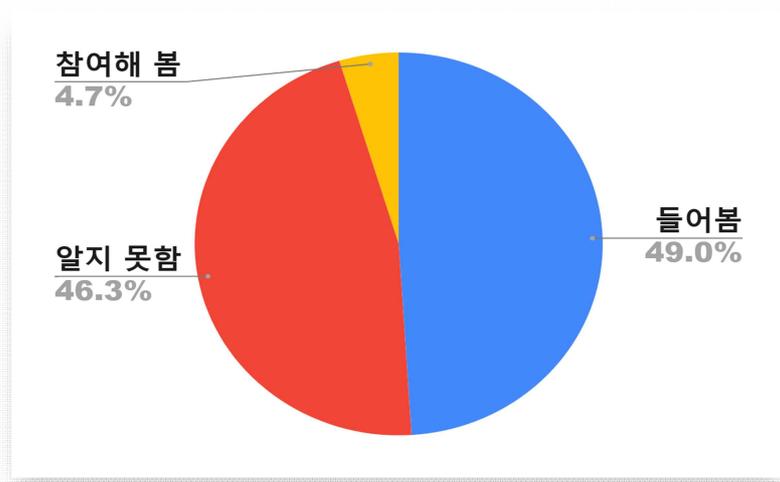
○ 전체 설문 응답자 중 영세택배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정책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66.4%, 들어봤다는 응답이 29.5%, 참여해봤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남.

[그림 3-21] 영세택배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정책 경험 또는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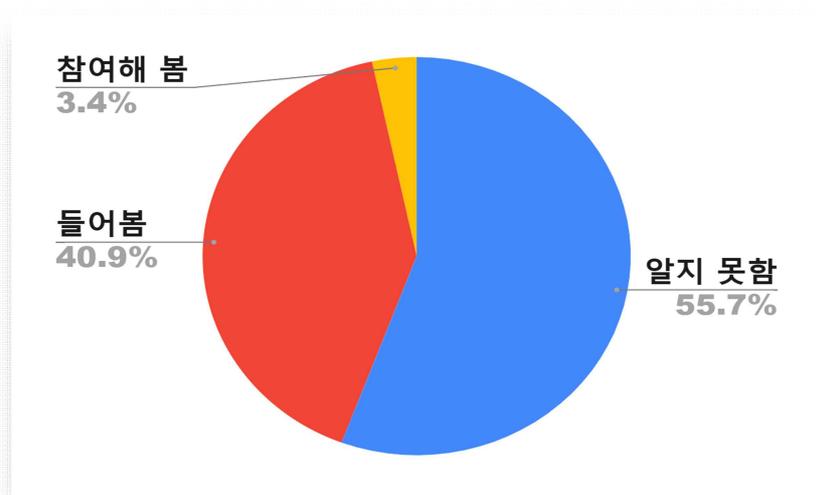
○ 전체 설문 응답자 중 감정노동종사자 심리상담·치유 지원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는 응답이 49%,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46.3%, 참여해봤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남.

[그림 3-22] 감정노동종사자 심리상담·치유 지원 정책 경험 또는 인지 여부



○ 전체 설문 응답자 중 배달노동자 상해보험 지원 정책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55.7%, 들어봤다는 응답이 40.9%, 참여해 봤다는 응답이 3.4%로 나타남.

[그림 3-23] 배달노동자 상해보험 지원 정책 경험 또는 인지 여부



(2) 서울시 취약노동자 지원정책 강화·확대 필요성 인식

○ 기존 서울시의 취약노동자 지원정책의 강화·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모든 정책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한 편이다’ 는 응답이 8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설문 응답자가 정책의 강화·확대가 ‘매우 필요하다’ 고 답한 정책은 배달노동자 상해보험 지원(51%), 유급병가 지원(47.7%), 노동자 쉼터(41.6%), 휴가비 지원(40.9%), 감정노동종사자 심리상담·치유 지원(40.3%), 영세택배사업장 휴게시설 지원(38.3%) 순임.

- 강화·확대가 ‘필요한 편이다’ 라고 답한 정책은 휴가비 지원(38.9%) 감정노동종사자 심리상담·치유 지원(38.9%), 유급병가 지원(36.2%), 노동자 쉼터(35.6%), 영세택배사업장 휴게시설 지원(35.6%), 배달노동자 상해보험 지원(33.6%) 순임.

[표 3-33]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의 서울시 취약노동자 지원정책 강화·확대 필요성 인식

	유급병가 지원		휴가비지원		노동자쉼터		영세택배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감정노동종사자 심리상담·치유 등 지원		배달노동자 상해보험 지원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매우 필요하다	71	47.7	61	40.9	62	41.6	57	38.3	60	40.3	76	51.0
필요한 편이다	54	36.2	58	38.9	53	35.6	53	35.6	58	38.9	50	33.6
보통	18	12.1	24	16.1	25	16.8	30	20.1	24	16.1	19	12.8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4	2.7	5	3.4	8	5.4	7	4.7	7	4.7	3	2.0
전혀 필요하지	2	1.3	1	0.7	1	0.7	2	1.3	0	0.0	1	0.7

	유급병가 지원		휴가비지원		노동자쉼터		영세택배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감정노동종사자 심리상담·치유 등 지원		배달노동자 상해보험 지원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없다												
합계	149	100	149	100	149	100	149	100	149	100	149	100

(3) 서울시 미 실시 산재예방정책에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서울시에서 아직 실시되지 않은 산재예방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지의 정책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한 편이다’ 는 응답이 대체로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배달노동자 정기정비 수당지원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한 편이다’ 는 응답이 77.8%로 가장 낮음.

- 전체 설문 응답자가 ‘매우 필요하다’ 고 답한 정책은 건강진단비 또는 건강진단 수당 지원(63.1%), 산재보험 비적용 노동자 치료 및 재활치료 지원(57.7%), 산재보험료 지원(56.4%), 고객갑질 대응 지원(53.7%), 안전보호구 지원(52.3%), , 노동자 권리보장 교육(52.3%), 배달노동자 정기정비 수당 지원(52.3%), 근골격계 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51%), 산업안전보건 준수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마련·배포(50.3%),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지원(46.3%), 가족돌봄 유급휴가(40.9%) 순임.

- ‘필요한 편이다’ 고 답한 정책은 가족돌봄 유급휴가(43.6%),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지원(37.6%), 고객갑질 대응 지원(34.9%), 노동자 권리보장 교육(34.9%), 산재보험료 지원(34.2%),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33.6%), 산업안전보건 준수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마련·배포 (32.9%), 안전보호구 지원(30.2%), 산재보험 비적용 노동자 치료 및 재활치료 지원(26.2%), 건강진단비 또는 건강진단 수당 지원(25.5%), 배달노동자 정기정비 수당 지원(25.5%) 순임.

[표 3-34]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의 산재예방정책 필요성 인식

	가족돌봄 유급휴가		안전보호구 지원		고객 갑질 대응 지원		노동자 권리 보장 교육		산재보험료 지원		산재보험 미적용 노동자 치료 및 재활 지원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매우 필요하다	61	40.9	78	52.3	80	53.7	78	52.3	84	56.4	86	57.7
필요한 편이다	65	43.6	45	30.2	52	34.9	52	34.9	51	34.2	39	26.2
보통	17	11.4	19	12.8	15	10.1	17	11.4	12	8.1	20	13.4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4	2.7	5	3.4	2	1.3	1	0.7	2	1.3	4	2.7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1.3	2	1.3	0	0.0	1	0.7	0	0.0	0	0.0
합계	149	100	149	100	149	100	149	100	149	100	149	100
	건강진단비 또는 건강진단 수당 지원		배달노동자 정기정비 수당 지원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근골격계 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산업안전보건 준수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마련, 배포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매우 필요하다	94	63.1	78	52.3	69	46.3	76	51.0	75	50.3		
필요한 편이다	38	25.5	38	25.5	56	37.6	50	33.6	49	32.9		
보통	15	10.1	24	16.1	22	14.8	19	12.8	24	16.1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2	1.3	7	4.7	2	1.3	3	2.0	1	0.7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0	2	1.3	0	0.0	1	0.7	0	0.0		
합계	149	100	149	100	149	100	149	100	149	100		

○ 산재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다음과 같음.

관련영역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산재 관련 정책
상담, 교육 등 정보제공	무료상담소
	정기적 교육
	산재정책에 대한 기초 교육프로그램
	유용한 정보에 관한 홍보와 교육
	산재 교육
	산재 관련 직종 교육 의무화
산재 관련지원	산재보험료지원
	산재병원 확대적용
	믿고 일할 수 있는 구체적 산재정책
	업무 중 부상시 접근이 용이한 정보공유
	산재 발생시 자비부담이 아닌 플랫폼사업장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
	현재 산재 적용 받으려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움. 자비로 처리하고 큰 사고 아니면 병원도 가지 않음. 산재 신청부터 처리까지 안내채널 마련 및 홍보 필요함.
	필요 건강검진 및 근무중 재해등에 대한 철저한 보상
	업무로 인한 근골격 질환 보험적용 및 수당 지급
	업종별, 사업장규모별, 고용형태별 건강격차 및 산재미적용율 등을 분기별로 발표, 적용율이 미비한 산업군에 특별관리를 통한 적용율을 높이는 정책
특수고용 노동자지 원	사회적 약자인 특고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인 도움과 실천
	대부분 특수고용직 신분인 배달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감정노동자관련법규에서 거의 제외되었으므로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함. 그것이 어려우면 공익적인 캠페인 등을 통해 사용자나 소비자들의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환경 개선해야함.
기타	사업장내 안전점검 실시
	보호장비 마련

관련영역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산재 관련 정책
	노동자 권리를 보호해주는 정책의 개선
	건강관련 지원
	휴일보장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가이드라인

제4장 서울시 산재 취약노동자 심층인터뷰 분석

1. 심층인터뷰 개요

(1) 심층인터뷰 참여대상 선정

○ 산재 취약노동자 심층인터뷰는 산재 취약노동자 설문조사 대상 직종 중 배달(라이더, 퀵서비스기사), 배송·운전(택배, 대리운전기사), 전문서비스(방과후교사, 예술강사, 학습지교사)와 그 외 프리랜서(방송작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귀금속세공업체, 편의점) 노동자 중 인터뷰(면접) 수락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2) 심층인터뷰 참여자 특성

○ 산재 취약노동자 심층인터뷰는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2월 6일까지 약 두 달간 오프라인(대면) 조사 형태로 진행되었음. 산재 취약 노동자 심층인터뷰 참여자는 총 10명(남성 7명, 여성 3명)이었으며, 배달 직종 노동자 2명(라이더, 퀵서비스기사), 배송·운전 노동자 2명(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전문서비스 노동자 3명(방과후교사, 예술강사,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1명(방송작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2명(귀금속세공업체, 편의점)이었음.

○ 심층인터뷰 참여자의 연령은 20대 1명, 30대 1명, 40대 4명, 50대 4명이었으며 경력은 최소 1년부터 최대 30년까지였음.

[표 4-1] 산재 취약 노동자 심층인터뷰 참여자 기초 특성

연번	직종	직업	성별	연령대	경력
1	배달	라이더	남	40대	1년
2		퀵서비스기사	남	40대	10년
3	배송·운전	택배기사	남	40대	3년
4		대리운전기사	남	50대	11년
5	전문서비스	방과후교사	남	50대	24년
6		예술강사	남	40대	15년
7		학습지교사	여	50대	27년
8	프리랜서	방송작가	여	30대	10년
9	5인 미만 사업장	귀금속세공업체 노동자	남	50대	30년
10		편의점 노동자	여	20대	2년

2. 계약 형태 및 노동시간

(1) 계약 형태

○ 근로계약을 체결한 예술강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편의점, 귀금속세공업체)를 제외한 심층인터뷰 참여자 중 상당수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용역계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

- 킥서비스기사와 방송작가는 구두계약을 체결할 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불안해했음. 이 경우 계약관계상 우위에 있는 사업주가 임의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사후입증이 어려워 노동자가 이를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 귀금속세공업체 노동자 역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으나 현재 재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킥서비스기사, 방송작가와 마찬가지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워짐.

10년간 일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입사 당시에 계약서를 쓴 적 없고요. 임금은 배달 횟수에 따라 받아요. 월말에 한 번씩 결제하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에 적립금을 10만원 적치하고 적립금에서 23%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받아요. 현금으로 받으면 회사가 적립금에서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2. 킥서비스기사)

외주제작사와 본사(방송국)를 오가며 근무했는데, 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각각 근무처와 함께 근무했어요. 예전에는 용역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디다. 그냥 구두계약만하고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7년 12월 문체부 표준계약서가 나오

면서 현재는 프리랜서 작가들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다만 외주제작사에서는 아직도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8. 방송작가)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 중 규모가 큰 회사(30명 정도 직원)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직원 중 나이 어리고 급여가 적은 직원 1명만 4대보험에 가입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근로시간이 적어져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를 하는 세공업체에서도 근로계약을 쓴 적은 없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10. 귀금속세공업체 노동자)

(2) 근무일 및 근무시간

○ 대부분의 심층인터뷰 참여자는 사업주에 의해 근무일, 근무시간이 사실상 통제되고 있었음.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사실상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장시간 근로, 휴게시간과 노동시간의 불명확한 구분, 휴일 및 휴게시간 부족, 서면계약서 미작성 등의 양상을 보였음.

- 귀금속세공업체 종사자는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업무량 감소로 근무시간도 함께 감소하여 현재까지도 근로시간이 회복되지 않았음. 그럼에도 임금감소분 보전 방안은 전혀 없는 상태였음.

- 방송작가와 택배기사의 경우 사업주와 용역 또는 위탁계약을 맺고 있으나 사업주가 사실상 강요하여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 방송작가의 경우 방송송출일이 다가오는 경우 휴무일 없이 밤을 새워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택배기사 역시 성수기(추석 전부터 설까지의 기간)에는 택배물량이 많아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음.

- 예술강사와 편의점 노동자는 월 59시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특히 예술강사 전원은 한 사업주(한국문화예술진흥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월 59시간을 상한으로 하여 그 이하의 근로시간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 이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4대보험 가입 등과 같은 노동법상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공공부문부터 변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합니다. 보통 오전 6시 45분 쯤 터미널 도착하여 오전 7시부터 분류작업 시작하게 됩니다. 분류작업은 보통 비수기는 9시에, 물량이 많으면 10시에 끝나는데 10시 30분에는 배송지로 이동해서 11시에 배송을 시작합니다. 비수기에는 보통 19시쯤 배송이 끝나는데 성수기인 추석 전부터 설 때까지는 통상 21시 정도까지 배송하게 됩니다. (심층 인터뷰 참여자 3. 택배기사)

매해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최대 계약기간으로 하며 월 59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초단시간 근무자로 근무하게 됩니다. 최대 1년 동안 476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근무시간(수업시수)의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당 받을 수 있는 수업시수가 450시간이 상한입니다. 월 59시간 채운다는 기준으로는 3월, 7월, 9월, 12월은 반달 근무하게 됩니다. 큰 학교는 주 3~4일, 초등학교처럼 학생 수가 적은 경우는 5일을 근무하기도 하며 한 학교에서만 일하는 경우는 매우 적고, 여러 학교를 돌아가면서 근무하게 됩니다.(심층인터뷰 참여자 5. 방과후교사)

통상적으로 일반 학습지교사들은 교재 챙기기, 진도잡기, 부모님 상담, 회비관리 등을 위해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서 근무를 해야합니다. 보통 10시 출근하면 12시 정도까지 교육을 받거나 잡무를 진행하고 12시부터는 방문 수업업무를 하게 됩니다. 수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과목당 10분(유아는 15분 정도 걸림) 정도입니다. 보통은 주당 150과목 정도 수업을 하는데 저는 주당 70과목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에는 오전에도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오후 2시 이후로

수업을 잡는데 오후 8시에서 9시까지 일을 하고, 늦게 끝나면 밤 열시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당 200과목 정도를 하면 밤 10시를 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7. 학습지교사)

통상 주 5일 근무를 하지만, 방송제작 송출일이 가까워지면 주 7일을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대부분 주 52시간 내로 근무하지만, 방송제작 송출일이 가까워지면 노동강도가 급속이 높아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72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사례도 있습니다. 방송송출일이 가까워지면 밤새워 근무하는 경우도 매우 잦고 주말, 휴일을 막론하고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8. 방송작가)

3. 산재보험 가입 현황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편의점, 귀금속세공업체)를 제외한 심층인터뷰 참여자 중 상당수가 2021년 7월 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 사유 제한 법률이 시행되자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당초 예상보다 많은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음. 심층인터뷰 참여자 중 산재보험 미가입자 대부분은 미가입 사유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가입방법에 대한 인지 부족과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들었음.

-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노동자 중 귀금속세공업체 노동자는 4대보험 가입을 원했으나 사업주가 거부함. 귀금속세공업계에서는 현금거래 및 매출신고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인건비가 매출액 대비 과다하게 신고될 수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공적신고(근로소득 신고, 4대보험 가입 등) 자체를 누락시키는 관행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 편의점 노동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체결시 사업주가 사회보험 가입 여부 선택을 제시하였고 노동자가 가입을 거부함. 산재보험 가입 거부 사유로는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들었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1년 사회적 합의¹⁴⁾에 참여한 회사 소속인 택배기사의 경우 택배요금 인상분(170원)을 고용·산재보험료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들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3.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도 올해부터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가입방법도 잘 모르겠고 번거롭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부담되어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산재보험료 부담이 뭐,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무가입이 아닌 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잘 가입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4. 대리운전기사)

보험가입은 안 했습니다. 작가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8. 방송작가)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가입하라고 하지도 않고 관련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면접 볼 때 사장님에게 4대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그걸로 그만이었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9. 귀금속세공업체 노동자)

입사하고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사장님이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하라고 하여 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도 부담되고 굳이 4대보험을 가입해야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역시 최저시급에 근무한 시간을 곱한 금액을 전액 지급받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가입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10. 편의점 노동자)

14)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2021. 6.) :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합의사항 중 하나로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최우선적 활용할 것이 있음.

4. 산업안전보건 실태

(1) 업무수행 관련 산업안전교육 실태

○ 심층인터뷰 참여자 대다수가 업무수행 관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음. 유해위험요인 교육을 받은 노동자 중 상당수는 교육 내용에 있어 노동자 보호 목적이 아닌 시설, 학생 보호 또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의사항을 전달받았을 뿐이었음.

-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배달, 배송·운전 직종 노동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배달, 배송·운전 직종 노동자 모두 유해위험요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하는 경우 소득손실이 발생하므로 교육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음.

- 택배기사는 사업주와 계약한 택배 물량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유해위험요인 교육을 위해 일을 쉬게 되면 택배기사가 담당할 택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용차¹⁵⁾를 사용해야 함. 용차비용은 하루 기준 통상 20만원 가량 되어 상당히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휴업손실에 더해 용차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유해위험요인 교육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음.

- 귀금속세공업체 노동자는 과거 30인 이상 사업장 근무 당시 안전교육전문업체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았으나, 현재 근무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전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음. 또한 귀금속세공 업무

15) “용차”는 사업주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차량으로 고정된 운송물량 이외에 추가 물량 등 필요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택배기사가 개인적 사유로 인해 택배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 용차를 배차하여 대신 운송하게 함.

수행시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MSDS¹⁶⁾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유해화학물질 관련 어떠한 교육도 받은 적 없는 상태였음.

플랫폼 회사 중 배민이나 쿠팡잇츠는 처음 가입 당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신입 사원 입사교육처럼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시청해야한 회원가입이 되며, 교육훈련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훈련비 지급됩니다. 교육 내용은 보호구, 오토바이 유지 관리를 위한 기본 점검 방법, 성희롱 예방교육, 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라이더의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이라던지, 유해요인 관련한 교육은 받지 않았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1. 라이더)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안전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이 없는 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 시간을 뺏다면 그 시간 동안 택배를 처리할 용차를 써야 하는 데 그 비용이 너무 높아서 교육을 받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 용차를 지원해준다면 교육에 참여할 택배 기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3. 택배기사)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입사 시에 사업주가 면접도 보고 여러 업무를 알려주는 방식의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안전교육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동료나 선배로부터 업무 관련 정보를 전달받는 게 전부입니다. 카카오의 경우는 어플 공지란에 안전 관련 내용을 올려서 정보를 전달하기는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기사들이 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교육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보통 공지내용은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전방주시를 해야한다거나, 신호 위반 금지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리기사들의 안전을 위한다기보다는 고객 만족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4. 대리운전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원에서 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지만, 연 1회 받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연 1회 받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특별히 안전을 위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고 시설관리를 위한 주의

16)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를 말함.

점을 중점적으로 전달받게 됩니다. 배려심 있는 선생님을 만나면 못이 튀어나온 부분, 비가 새는 부분 등을 안내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배려심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경우에 있는 일이지 매번 있는 일은 아닙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6. 예술강사)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일체 아무 교육도 받아본 적 없어요. 예전에 다니던 근로자 30인 이상 업체에서는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전교육전문 업체에서 방문해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점심을 먹고 난 후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일하면서 회사에서 MSDS를 보거나 이에 대해 교육받은 적도 없습니다. 안전보건표지도 마찬가지로요. (심층인터뷰 참여자 9. 귀금속세공업체 노동자)

(2) 안전설비·장치 및 보호구 지급실태

○ 심층인터뷰 참여자 대다수가 자비로 보호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소수의 심층인터뷰 참여자는 사업장에 안전설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설비 부족 및 노후화 등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보호구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있었음.

-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호구 착용이 필수적인 라이더, 퀵서비스기사 모두 보호구는 자비로 구매하고 있었으며 헬멧, 방한장갑은 라이더 대다수가 착용하고 있었으나 안전보호대 착용률은 낮은 것으로 보임.

- 귀금속세공업체는 분진, 화학약품 누출 예방을 위한 통, 팬,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세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 환기 기능을 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상태였음. 그리고 귀금속세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금가루를 수거¹⁷⁾ 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카펫을 깔고 작업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17) 작업장 바닥에 카펫을 깔고 금가루를 모으는데, 금가루를 모으기 위해 장기간 카펫을 청소하지 않아 각종 분진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됨.

이 장기적으로 모여 노동자가 상시적으로 분진에 노출되어 있었음. 이에 더해 상시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작업 중 화상, 베임, 끼임, 절단 등 사고 발생 위험도 역시 높았음. 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설비나 보호구 지급이 미흡한 실정이었음.

- 대리운전기사는 업무 중 세미정장 착용이라는 암묵적 복장규범이 있어 안전화를 신기 어려웠음. 그 결과 겨울철 미끄럼 사고가 다발하고 있었음. 또한 주취자 고객이 대다수를 차지하기에 고객으로부터의 폭행, 폭언, 무고 등과 같은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음. 고객의 폭행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 및 이로 인한 사고발생시 사후입증을 위해 바디캠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모든 안전보호구는 자비로 구매합니다. 통상 보호구로는 헬멧, 장갑류, 무릎보호대, 안전화(잘 찢어지지 않는 운동화)를 사용합니다. 보호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헬멧인데 저렴한 것은 2만원, 고가는 100만원까지도 합니다. 헬멧은 10만원 정도는 해야 사고가 났을 때 안전이 담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저렴한 헬멧은 보호가 잘 안될 것 같고, 특히 얼굴을 보호해주지 않는 헬멧이 그렇습니다. 무릎보호대도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이 되겠지만 대다수의 라이더는 잘 착용하지 않습니다. 돈도 그렇고 굳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1. 라이더)

겨울철에 이동 중 기사들의 미끄럼사고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경상에서부터 중상까지 다치게 됩니다.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안전화를 신어야 하지만 등산화나 안전화를 착용하면 손님이 싫어하고 회사도 세미정장을 착용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안전화를 신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고객이 많아 폭언, 폭행 등과 같은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전 맞은 적은 없지만 욕설, 모욕적인 언행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운전 중에 욕설을 하거나 헐박을 하면 긴장이 되고 무서워 정신이 없어지므로 운전 집중하기 힘듭니다. 이러다가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바디캠을 착용하면 좋은데,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리운전 기사의 바디캠 착용과 관련하여 법규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한 고객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후

자해한 적이 있습니다. 고객이 자해한 후 경찰에게 쌍방폭행을 주장했는데 다행히 기사가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었고 고객은 무고 및 폭행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4. 대리운전기사)

토시나 목장갑은 회사에서 지급하며 무조건 끼고 작업합니다. 작업 중에 분진이 미세하게 나오는데, 분진, 화학약품 흡입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일하는 중에 분진이 계속 날리고, 바닥 전체가 카펫이라 먼지가 많이 날려서 폐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도 회사에서 마스크를 제공하거나 쓰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귀금속 계통은 거의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귀금속가루가 카펫에 스며들면 정기적으로 분석업체라고 하는 위탁업체가 수거하기 때문입니다. . 제가 하는 작업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금속부품을 깎는 작업과 약을 치는 작업, 세척작업이 있습니다. 약을 치는 작업은 화학약품을 바른 기계를 접촉하는데, 회사에서 제공한 골무, 일회용 비닐장갑, 목장갑 순으로 끼고 작업합니다. 세척작업을 할 때에는 장갑끼고 부품을 집게로 걸어서 작업을 하는데, 세척작업을 할 때 에스크린이란 화학약품을 써서 화상 위험이 있으나 화상 예방을 위한 장갑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9. 귀금속세공업체 노동자)

(3)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안전보건 관련 감독 실태

○ 심층인터뷰 참여자 전원이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험성 평가와 같은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안전보건과 관련한 감독이나 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 또한 심층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이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안전보건 관련 감독과 관련하여 아예 인지하지 못해 그 개념과 의미조차 모르는 상태였음.

사업주가 산업안전 관련해서 뭔가 조사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노동조합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 설문조사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회사에

정부기관에 안전과 관련해서 나온 적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7. 학습지교사)

작업환경측정, 위험성 평가 같은 것이 뭔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 회사에 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9. 귀금속세공업체 노동자)

작업환경측정, 위험성 평가 같은 것에 대하여 전혀 들어본 적 없습니다. 기관에서 나온 것은 여성안심귀가길 서비스 담당자가 한번 편의점에 방문한 적은 있지만, 그 외에는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10. 편의점 노동자)

(4) 건강관리 실태

○ 심층인터뷰 참여자 대다수에게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건강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았음. 또한 심층인터뷰 참여자 대다수가 건강검진 실시 전 건강진단에 대한 설명 또는 안내를 받지 못했음.

- 택배기사는 용차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일반 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음.

- 예술강사는 단체협약으로 사업장에서 추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었음.

- 학습지교사의 경우 2019년까지 회사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나 2020년 이후 중단되었으며 이는 비용절감이 원인 것으로 판단됨.

- 방송작가는 MBC가 유일하게 방송작가도 자사 정직원에게 제공되는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었음.

건강진단을 2020년 말부터 본사에서 병원차를 불러서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혈압, 혈액, 심전도, 흉부엑스레이 등)을 하는 거지 회사에서 추가로 건강검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검사항목을 늘려 보다 밀도 높은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이 없는 한 택배기사들이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에 한 PCR검사는 회사 지원이 전혀 없었고, 코로나백신을 3차로 맞을 때는 본사 방침이 용차지원(다른 차를 배차하여 대신 운송하게 하는 '용차'시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패널티를 없애는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3. 택배기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매년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회사는 매년 건강검진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 회사가 해주는 추가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없지만 결핵 문제가 발생하자 올해 결핵 관련 추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6. 예술강사)

2019년까지는 회사가 매해 건강검진을 시켜줬습니다. 2020년에는 학급지교사 수수료 비율을 변경하는 신제도를 도입(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변동수수료에서 고정수수료-방문교사 50%, 러닝센터교사는 40%)하면서 신제도를 선택한 교사에게는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제도를 없앴습니다. 기존에 수수료 비율이 높아 구제도를 선택하여 유지하고 있는 교사는 복지제도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건강검진, 경조사 지원(축의금, 조의금), 자녀지원(눈높이 학습시 회비지원)을 받고 있지만 신제도를 선택한 교사는 복지제도가 전부 적용되지 않아요.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구제도를 적용받는 교사는 전체 10%정도 밖에 안됩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7. 학습지교사)

사실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시간이 내기도 어려운 적이 많습니다. 여태까지 사업주가 별도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해준 적은 한번도 없었지만 MBC에서는 자사 정직원 외 프리랜서 방송작가에게도 심리치유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사작가들은 방송을 제작하면서 피해자 진술을 듣고 모자이크 전 편집 화면 노출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심리치유프로그램을 이용해본 작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8. 방송작가)

(5) 휴게시간 및 휴게시설 실태

① 휴게시간 실태

○ 심층인터뷰 참여자 대다수는 업무수행 도중 대기시간을 제외하고 휴게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음.

- 배달노동자(라이더, 퀵서비스기사기사 기사)와 배송·운전 노동자(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는 대부분 주문대기시간을 제외하고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했으며 빠른 업무종료 또는 더 많은 주문 확보를 위해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잦은 상황이었음.

- 방과후 교사와 예술강사는 수업시간 종료 후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학습지교사의 경우 담당 과목 학생 집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여유시간이 있는 경우에 휴식을 취했으며 불규칙한 수업 일정으로 인해 식사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도 종종 발생했음.

- 방송작가 역시 방송송출일이 다가오는 경우 휴게시간 없이 밤을 새워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음.

- 편의점 노동자 또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손님이 없는 대기시간에 식사를 해야 했고 식사 도중 손님이 방문하면 업무를 수행해야 했음. 편의점에서 혼자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서는 가게 문을 잠그고 다녀와야 했음.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조절합니다. 하루에 배송할 분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한 끼도 안 먹고 일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통상적으로 1

시에서 2시 정도에 식사를 차 안에서 하고 휴식을 20~30분 정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3. 택배기사)

일반 학습지교사들은 보통 10시 출근해서 12시 정도까지 교육을 받거나 잡무를 진행합니다. 12시부터는 방문 수업업무를 하는데, 1과목당 10분(유아는 15분 정도 걸림) 정도 걸리고 보통은 주당 150과목 정도를 하게 됩니다. 방학에는 오전에도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스케줄이 불규칙해서 점심은 건너뛰기기도 합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7. 학습지교사)

휴게시간도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휴게시간은 커녕 휴일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8. 방송작가)

휴게시간 없이 7시간 내내 근무하고 있습니다. 쉴 장소가 별도로 있지 않아 카운터에 앉아있는 게 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건물 내에 있어서 사용하기 편합니다. 화장실을 갈 때는 가게 문을 잠그고 가고 있습니다. 식사는 카운터에서 먹다가 손님이 오면 업무를 보고 손님이 가면 다시 식사하고 있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9. 편의점 노동자)

② 휴게시설 실태

○ 심층인터뷰 참여자 대다수가 근무 중 휴식을 취할 공간이 부족한 상태였음.

- 라이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는 주문대기시간에 거리, 건물, 지하철역 등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했으며 혹서기나 혹한기의 경우 편의점, 커피숍 등을 이용했음.

- 택배기사는 휴게공간이 마땅치 않아 업무용 차량에서 식사 및 휴식을 취하고 있었음.

- 방과후 교사와 예술강사는 출강하는 학교의 교사휴게실 이용이 가능한 경우 교사휴게실에서, 방과후강의 준비실이 제공되는 경우 방과후강의 준비실에서 휴

식을 취했음. 하지만 교사휴게실의 거리가 멀거나 시설이 열악한 경우, 방과후강의 준비실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휴게공간이 전혀 없어 교무실에 비치된 소파를 이용하거나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에서 휴식을 취했음.

- 방송작가는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방송작가를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은 부여되지 않았으나 정규직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었음. 하지만 지방 방송국의 경우 정규직용 휴게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외주제작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전혀 없었음.

편의점,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쉽니다. 중간에 주문이 없는 경우는 그냥 길에서 오토바이 세워놓고 쉬며 너무 덥거나 추울 경우에는 건물에 들어가서 쉬다가 주문을 받고 일하기도 합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2. 퀵서비스기사)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담당 지역 안에 있어도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차, 위치 문제 등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요. 물류단지 근처처럼 접근도가 좋거나, 차량정비시설(이를테면 엔진오일 등 교체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찾아갈 용의가 있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3. 택배기사)

학교 자체에 휴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어있는 방과후교사에게 배정된 공간을 사용하곤 합니다. 방과후교사 배정 공간도 없는 경우에는 교무실 한켠에 있는 쇼파 등을 이용하거나 그냥 교실에서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 휴게시설이 있지만 여성교사의 비율이 높다보니 여성교사 휴게실보다 남교사 휴게실이 있어도 거리가 멀거나 시설이 열악한 경우도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특별실(음악실, 시청각실 등)을 강사에게 배정하여 학생들이 특별실로 와 수업하게 되므로 특별히 휴게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6. 예술강사)

휴게시설은 전혀 없고 휴게시간도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송국 본사의 경우 정규직이 사용하는 수유실, 숙직실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지방 방송국의

경우에는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작가를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은 없어요. 외주제작사의 경우는 매우 영세하여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꾸라꾸 침대 혹은 요가매트를 설치하고 작가들이 돌아가면서 자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8. 방송작가)

5. 업무상 재해 실태

(1) 사고 및 질병 발생 실태

① 사고발생 실태

○ 심층인터뷰 참여자 대다수는 직접적인 사고경험은 없었으나 사고위험 경험, 동료 노동자의 사고 사례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어 상당히 높은 긴장 속에서 근무하고 있었음.

- 라이더와 퀵서비스기사는 촉박한 배달시간, 주행 중 오토바이 고장(시동꺼짐, 타이어 펑크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았음.

- 대리운전기사는 겨울철 이동 중 미끄럼 사고위험과 함께 고객의 과속 요구·고객의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한 주의력 저하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음. 특히 미끄럼사고는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안전화 착용으로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복장규범으로 안전화 착용이 어려워 사고가 다발하고 있었음.

- 학습지교사의 경우 이동 중 교통사고, 넘어짐으로 인한 염좌·골절, 낙상사고가 발생했으며 학생 방문지에 반려견이 있는 경우 물림사고도 종종 발생했음.

- 방송작가 또한 촬영지로의 이동 과정 그리고 촬영지에 촬영 도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많았음.

오토바이 정비 관련하여 주변에 사고가 날 뻔한 사례들은 종종 들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타이어 펑크 등과 같은 일이 발생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달시간으로 인해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되기에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게 콜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과속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달이 너무 늦으면 콜이 취소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회사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고객의 불만, 고객점수를 낮게 주는 등으로 인해 시간을 맞추려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객점수가 낮으면 라이더에게 마이너스가 되므로 배민에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1. 라이더)

특히 겨울철에 이동 중 기사들의 미끄럼 사고가 잦으며, 한번 미끄러지면 경상뿐 아니라 중상까지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끄럼사고가 많음에도 대부분의 기사들이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산화나 안전화를 착용하면 좋겠지만 손님들이 싫어하고 회사도 세미정장을 착용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등산화 착용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행 중 고객 압박으로 인한 과속과 운행 중 폭언, 폭행으로 인한 압박감, 불안 등으로 인한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폭언, 폭행, 성희롱 등과 같은 위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하루 기본업무할당량을 부여하고 이런 할당량을 달성한 기사에게 우선적으로 콜 선택권을 부여하기때문에 운행 중에 과속하게 되고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도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2. 퀵서비스기사)

운행 중 고객 압박으로 인해 과속하게 됩니다, 폭언, 폭행, 성희롱 등과 같은 위험, 운행 중 폭언, 폭행으로 인한 압박감, 불안 등으로 인한 주의력 결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하루 기본업무할당량을 부여하여 조건을 달성한 기사에게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리운전기사로서는 운행 중 과속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과로하게 되어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위험하고요. 그리고 주차할 때나 출발할 때 전방/후방 주시 부족으로 인한 사고위험도 높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4. 대리운전기사)

많은 학생에게 수업을 하다보니 급하게 이동하게 되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아이를 만나러 서두드라가 다리를 빼거나 골절상을 입

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요. 낙상사고도 있었습니다. 개한테 물리는 사고도 많이 있는데, 학생 집에 개가 있으면 주차장이나 베란다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습지교사의 수업 현장상황은 정말 열악합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7. 학습지교사)

일하다가 세척기물이 갑자기 끓어올라서 손등이 데인 적이 있습니다. 초음파 진동으로 물이 갑자기 끓어올라서 다쳤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작업기계에 걸린 물건에 손이 맞아서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다치는 경우 상처가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동료근로자가 물건에 맞아서 손이 찢어진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9. 귀금속세공업체 노동자)

② 질병발생 실태

○ 심층인터뷰 참여자 중 상당수는 직접적인 질병경험은 없었으나 동료 노동자의 질병사례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많이 있었음. 심층인터뷰 참여자 중 대다수가 정신건강의 위험성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업종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위장질환 등이 나타남.

- 배달노동자(라이더, 퀵서비스기사)와 배송·운전 노동자(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는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어깨, 허리 등) 발병 사례가 많았음.

- 대리운전기사는 야간업무로 인한 수면장애,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고객 중 주취자가 많은 업무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대우에 기인한 정신질환(우울증 등) 발병 사례가 많았음.

- 학습지교사는 무겁거나 부피가 큰 교재, 교구 등을 가지고 이동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어깨, 허리 등), 오랜 이동시간으로 인한 하지정맥류, 불규칙한 식사시간으로 인한 위장장애, 화장실 이용 어려움으로 인한 방광염 발생 사례가 많았음.

- 방송작가 또한 밤샘·야간작업으로 인한 여성질환(갑상선, 불임, 유방암, 자궁질환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등) 발병사례가 많았음.

10시간 이상씩 근무하면서 어깨, 관절이 아프고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층 인터뷰 참여자 2. 킥서비스기사)

허리, 척추 관련 질병, 불면증과 같은 수면장애가 많습니다. 그리고 18~9시간 가까이 과로하는 분들의 경우 치아가 빠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심층인터뷰 참여자 4. 대리운전기사)

하루에 20~30과목, 많게는 40과목 정도의 교재와 보조교구(유아도구)를 들고 다니는데 이게 굉장히 무겁다보니 어깨, 손목에 질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래 걷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도 발생합니다. 수업을 할 때 양반다리를 많이 하고 근무를 하다 보니 순환이 안 되어 문제가 되고, 식사시간이 불규칙해서 위장 장애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수업 중에 가지 못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7. 학습지교사)

밤샘으로 인한 여성질환(갑상선, 불임, 유방암, 근종, 자궁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시사사건 유가족 인터뷰, 촬영 편집 시 모자이크 전 화면 등으로 인한 충격도 큼니다. 선후배 관계, pd와의 관계에서 갑질, 폭언, 성희롱도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이상한 PD를 만나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8. 방송작가)

(2) 업무상 재해 보상실태

○ 심층인터뷰 참여자 대다수가 산재발생 시 산재를 신청하거나 주변에서 산재를 신청한 사례를 목격한 적이 없었음.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원인로는 심층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이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산재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을 들었음.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음

나 실제 재해발생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드문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심층인터뷰 참여자 대다수가 업무상 재해 발생시 자비로 요양비와 휴업손실을 처리했음.

- 배달노동자(라이더, 퀵서비스기사)와 배송·운전 노동자(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는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 대부분을 민간보험으로 처리하였음. 이는 산재보험의 제도적 혜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추후 발생 가능한 후유증 대비책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보임.

- 택배기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계약한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를 위해 발생하는 용차비용(다른 차를 배차하여 대신 운송하게 하는 것을 말함)이 산재신청시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보다 높아 중대한 재해가 아니라면 계속 노동을 해야 했음.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는 교통보험으로 처리하며 휴업손실 역시 사고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산재를 신청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주변 라이더들도 본인이 산재보험을 가입했는지, 가입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전혀 정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몰라서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2. 퀵서비스기사)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산재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에 품이 들어가고 당장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을 쉬게 되면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데, 용차를 써야 하기 때문에(건당 600원 정도) 쉴 수가 없습니다. 용차 비용이 건수가 많을 때는 통상 하루에 20만원 정도나 됩니다.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휴업급여는 용차 비용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쉬지 못해서 휴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3. 택배기사)

6. 갑질 경험 및 대응실태

○ 심층인터뷰 참여자 대다수가 사업주 또는 고객(학부모, 학생 포함)과의 갈등 상황에서 부당대우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부당대우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심층인터뷰 참여자 대다수가 사업주로부터 사전예방조치나 사후보호조치를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고객 중 다수가 주취자인 업무특성상 고객으로부터의 폭언 또는 모욕을 경험한 사례가 많았으며 그 양태도 매우 중한 경우가 다수였음. 고객으로부터의 폭행경험 뿐 아니라 폭행사건에 대한 무고 경험도 있었음.

- 방과후교사, 예술강사, 학습지교사는 사업주보다 주로 고객(학부모, 학생)과의 갈등상황에서 부당대우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고객이 폭언이나 모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렬한 기억이 몇 차례 있는데 당시 추석 저녁에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동 중 핸드폰 내비가 GPS를 못잡아서 고객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욕설을 하면서 "다리건너서 만원 줄테니 꺼져, ***야"라고 하여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당시 다른 가족들도 타고 있었는데, 동승한 가족들이 계속 말렸음에도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저도 항의를 하자 톨게이트 갓길에 세우게 했습니다. 저도 112에 신고했어요, 거기서도 차에서 내려서 저를 폭행하려고 했고, 가족들이 말리자 동생을 폭행하는 것을 보며 변례사건¹⁸⁾이 생각나 불안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리고 한번은 고객이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언쟁하다가 핸드폰을 조수석 유리창으로 던진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던진 후에 뒷자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오면서 흥기를 찾으려 죽이러 가겠다고 했고, 그러던 와중에 저에게 가족이 있냐고 물어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운전엔 집중할 수가 없어서 사고위험도 있었어요. 고객이 술이 취해서 자기 차량을 파손한 경우도 있었고요.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회사는 무조건 참으라고만 합니다. 술이 취해서 정상이 아니고, 술취한 사람 상대하려고 대리운전기사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참으라고만 합니다. 오히려 회사는 고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라는

공지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4. 대리운전기사)

일하다 보면 학부모 민원 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학부모 민원은 강사 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동료강사들이 쉽게 상처를 받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민원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적 보호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 내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는 합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5. 방과후교사)

예전에 고등학생 남학생 다수가 여성 강사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위협하는 등 폭행 직전까지 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강사는 충격을 받아 정신과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폭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모욕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수업방해를 하면서 강사의 폭행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 인한 스트레스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학생으로부터 격리를 시켜줍니다. 상대가 미성년자 학생이다보니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있다 해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사안을 축소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보다는 사안을 묻으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6. 예술강사)

제가 10년차를 넘었을 때 아파트에 수업을 하기 위해 갔는데, 수업을 받지 않겠다고 문앞에 세워 놓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회원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걸 자리에 앉히다가 뿌리치는데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수업 때 아버님들이 샤워를 하고 옷을 벗고 나오면 놀라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상황이 발생해도 회사가 특별히 해주는 조치는 없습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노조가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학습권 침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걸 보면 회사는 교사 안전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문제 상황에 대해 사무실 미팅 때 보고를 하고 대응책을 요구를 하면 회사는 그냥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얘기만 하고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부모들이 교사에 동의 없이 보안캠(몰래카메라)를 집에 설치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교사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는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폭언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수업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 회사가 다시 수업을 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돈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후 학부모가 수업을 다시 요구했고, 교사가 수업을 거부하자 관리자가 대신 수업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7. 학습지교사)

본사나 외주제작사나 외부 협찬을 받게 되는데, 그 관리를 PD와 작가가 하게 됩니다. 상시적으로 연차 높은 PD, 연차높은 작가, 섭외출연자, 협찬 기업 담당자 등이 연락을 해오는 것이 힘듭니다. 저는 아직 겪은 적이 없지만 선후배 관계, pd와의 관계에서 갑질, 폭언, 성희롱도 많이 발생합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8. 방송작가)

일하다가 고객들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기는 합니다. 핸드폰을 내밀며 기프티콘을 무작정 찾아달라고 하시거나, 지적장애인 분인 듯한 분이 라면을 냉장고 위에서 먹어서 이를 만류했더니,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버리거나, 일부러 장소를 더럽히고 가거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거나, 하는 등 손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폭언, 모욕 등을 당한 적은 없지만, 야간근무하는 경우 힘든일이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층인터뷰 참여자 10. 편의점 노동자)

18) IC 고속도로 살인사건 : 고객이 운행 도중에 대리운전기사를 내리게 한 후 후진으로 대리운전기사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

7. 심층인터뷰 결과 요약

○ 2023년 서울시 산재취약노동자 심층인터뷰는 산재 취약 노동자 설문조사 대상 직종 중 배달(라이더, 퀵서비스기사), 배송·운전(택배, 대리운전기사), 전문서비스(방과후교사, 예술강사, 학습지교사)와 그 외 프리랜서(방송작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귀금속세공업체, 편의점) 노동자 중 인터뷰(면접) 수락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앞서 살펴본 심층인터뷰 요약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음.

[표 4-2] 산재 취약 노동자 심층인터뷰 요약 - 배달 및 배송·운전

		라이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기초 정보	성별	남	남	남	남
	연령	40대	40대	40대	50대
	경력	1년 미만	10년	3년	11년
계약	형태	용역·위탁계약	용역·위탁계약	용역·위탁계약	용역·위탁계약
	서면 작성 여부	○	X	○	○
산재보험가입		○	○	○	X
미가입 사유		-	-	-	비용부담
안전교육		○	X	X	X
안전설비·장치 및 보호구		- 자비구매 - 헬멧, 장갑, 보호대	- 자비구매 - 헬멧, 장갑, 보호대	- 자비구매 - 손목보호대, 허리보호대, 카트	- 자비구매 - 방한용품, 안전화
안전감독		X	X	X	X
추가 건강진단		X	X	X	○ *노동부 지원

	라이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추가 건강프로그램	X	X	X	X
휴게시간	주문대기시간	주문대기시간	거의 없음	콜대기시간
휴게시설	거리, 편의점, 커피숍, 건물 등	거리, 건물, 편의점 등	업무용차	거리, 편의점, 건물 등
사고	주행 중 시동꺼짐, 촉박한 배달시간	시동꺼짐, 촉박한 배달시간	-	넘어짐, 접촉사고 등과 같은 교통사고
질병	어깨, 관절통증	어깨,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 허리통증
재해보상	-자비 -민간보험	-자비 -민간보험	-자비	-자비
산재미신청 사유	-산재 해당 여부 및 신청절차 인지부족	-산재 해당 여부 및 신청절차 인지부족	-산재신청해도 용차비용 부담으로 쉬기 어려움	-미가입
휴업손실	-자비	-자비	-자비 -용차비용	-자비
갑질경험 및 대응	-	-	-사업주 갑질, 폭언 사례가 종종 있음 -예방·사후조치 전혀 없음.	-주취자의 폭행, 폭언, 모욕 다발 -기사 폭행 후 자해하고 무고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음 -예방·사후조치 전혀 없음.

[표 4-3] 산재 취약 노동자 심층인터뷰 요약 - 전문서비스

		방과후교사	예술강사	학습지교사
기초 정보	성별	남	남	여
	연령	50대	40대	50대
	경력	24년	15년	27년
계약	형태	용역·위탁계약	근로계약	용역·위탁계약

		방과후교사	예술강사	학습지도교사
	서면 작성 여부	○	○	○
산재보험가입		X	○	○
미가입사유		비용부담	-	-
안전교육		X	○	X
안전설비·장치 및 보호구		-	-	-
안전감독		X	X	X
추가 건강진단		X	X	X *중단, 단체교섭중
추가 건강프로그램		X	X	X
휴게시간		수업 사이 쉬는 시간	수업 사이 쉬는 시간	이동 중 휴식
휴게시설		-학교 내 휴게공간이 없거나 모자란 경우가 대다수임	-학교 내 휴게공간이 없거나 모자란 경우가 대다수임	-없음
사고		-	-무용 등 과목은 종종 넘어짐 등 사고 발생	-개물림, 낙상, 넘어짐, 교통사고 등
질병		-	-정신질병 사례	-어깨, 손목, 허리 등 관절질병 -하지정맥류 -방광염 -위장질병
재해보상		-자비	-자비	-자비
산재미신청 사유		-미가입	-산재 해당 여부 및 신청절차 인지부족	-산재 해당 여부 및 신청절차 인지부족
휴업손실		-자비	-자비	-자비
갑질경험 및 대응		-학부모 민원 -예방·사후조치 전혀 없음.	-학부모 민원 -학생의 모욕 및 강사의 폭행 유도 -예방·사후조치 전혀 없음.	-폭행, 모욕 -수업 중 목욕 후 나오는 학생 아버지와 마주친 사례 -예방·사후조치 전혀 없음.

[표 4-4] 산재 취약 노동자 심층인터뷰 요약 - 프리랜서 및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방송작가	귀금속세공업체 노동자	편의점 노동자
기초 정보	성별	여	남	여
	연령	30대	50대	20대
	경력	10년	30년	2년
계약	형태	용역·위탁계약	근로계약	근로계약
	서면 작성 여부	X	X	O
산재보험가입		X	X	X
미가입사유		-산재 가입 가능 여부 인지 부족	-사업주 거부	-비용부담
안전교육		X	X	X
안전설비·장치 및 보호구		X	-안전설비 미흡 -MSDS 비치하지 않음 -보호구 일부 지급 -보호구 일부 자비구매	X
안전감독		X	X	X
건강진단 추가 건강진단		X	X	X
추가 건강프로그램		X	X	X
휴게시간		-방송송출일이 다가오는 경우 휴게시간은커녕 휴일도 확보하기 어려움	-1시간	-없음
휴게시설		-방송국 본사의 경우 정규직 이용 휴게시설 이용가능 -지방방송국은 정규직 이용 휴게시설 이용 어려움	X	X

	방송작가	귀금속세공업체 노동자	편의점 노동자
	-외주제작사는 휴게공간 없음. 간이침대나 요가매트를 설치해 잠을 자고 일함		
사고	-외부촬영시 이동, 촬영지에서 사고 발생 사례	-화상, 베임, 절단 사고 다발	-
질병	-밤샘작업으로 여성질환(갑상선, 불임, 유방암, 자궁질환) 다발 -정신질환	-	-
재해보상	-자비	-자비	-
산재미신청 사유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휴업손실	-자비	-자비	-자비
갑질경험 및 대응	-PD, 연차 높은 작 가, 섭외출연자, 협 찬기업 담당자로부터 터의 밤낮 가리지 않는 잦은 연락 -선후배 작가 관계, PD와의 관계에서 갑질, 폭언 사례 다 발 -예방·사후조치 전혀 없음	-	-핸드폰을 내밀며 기프티콘을 무작정 찾아달라고 하거나 하는 등의 말도안되 는 요구를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일 반쓰레기통에 버리 거나 일부러 장소를 더럽히는 등 -예방·사후조치 전혀 없음

제5장 결론 :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1. 표준 계약서 및 표준 근로조건 가이드라인 작성 및 보급 필요성

○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예술강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편의점, 귀금속세공업체)를 제외한 심층인터뷰 참여자 중 상당수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용역계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

- 노동법상 지위의 불안정성과 사업장의 영세성에 기인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매우 불안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재해 발생시 적절한 보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음.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에 의한 권리 보호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

○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전체 설문대상 응답자가 용역(도급)계약관계·프리랜서·기간제 등 비정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설문 응답자의 고용형태는 용역·도급계약관계가 48.3%, 정규직 근로계약관계가 17.4%, 기간제근로계약관계가 15.4%, 프리랜서가 2%, 파견직이 0.7%이고, 직종별로 미술등 창작활동(정규직 근로계약관계 71.4%)를 제외하고 비정규 고용관계가 월등히 높았고 특히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정규직 근로계약관계 0%), 배달(정규직 근로계약관계 1.8%)은 극단적으로 비정규 고용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음.

○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소규모 사업장, 특수고용, 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표준 계약서 및 표준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을 작성, 보급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음.

-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표준 계약서 및 표준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 교육, 배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표준 계약서 및 표준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에 대한 활용과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와 학습지교사를 제외한 직종에서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교육청 등에서 작성, 배포한 표준계약서가 있었음. 하지만 심층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이 표준계약서 존부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거나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서울시는 현재 표준계약서가 없는 학습지교사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 보급하고 표준 계약서가 이미 마련된 직종에 대해서는 기존의 표준계약서를 홍보, 교육할 필요성이 있음.

2. 산재 보상을 위한 상시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원인으로서는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산재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을 들었음.

- 산재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실제 재해발생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드문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심층인터뷰 참여자 대다수가 업무상 재해 발생시 자비로 요양비와 휴업손실을 처리했음.

-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사실상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장시간 근로, 휴게시간과 노동시간의 불명확한 구분, 휴일 및 휴게시간 부족, 낮은 서면계약 체결률 등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함.

○ 설문조사 분석 결과, 산재보험 가입을 대비 낮은 산재보험 수혜율이 문제점으로 확인되었음. 산재보험 가입율은 전체응답자의 76.5%에 이르는데, 산재발생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료했다는 응답은 11.1%에 그치고,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다고 응답한 직종은 전문서비스(33.3%), 배달(12.1%), 배송(5.3%) 뿐임.

○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산재 취약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전담 인력을 구성하고 산재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외부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 MOU를 체결해 상담 및 권리구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택배기사는 재해가 발생하여도 용차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 재해 발생 택배기사에게 서울시가 용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 택배회사, 노동조합이 사회적 협약을 통해 택배회사(원청)에서 용차 담당 상시인원을 확보하여 택배기사가 산재요양기간, 노동교육, 건강검진, 휴가사용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함.

- 산재보험혜택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특히 배달, 배송의 경우 대부분 자동차·오토바이 운행중 사고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한 배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후유장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필요함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3. 산재보험 가입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산재보험 미가입자 대부분은 미가입 사유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가입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들었음.

○ 설문조사 분석 결과, 산재보험의 경우 직종별로 가입률이 배달(94.5%), 가사·청소·돌봄(75%), 전문서비스(72.2%), 미술 등 창작활동(71.4%), 배송(69.1%),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0%) 순으로 나타났음.

- 전체 응답자 중 산재보험 미가입자(23.5%)의 미가입 이유가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모른다(정보부족)(34.3%), 보험료가 부담된다(28.6%), 플랫폼 사업장에서 가입을 반대(20%), 프리랜서(5.7%), 재택근무(5.7%), 기타(5.7%) 순으로 나타났으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에 대한 홍보, 산재보험료 지원정책, 플랫폼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제도 및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함.

- 전체 설문 응답자 중 60.4%는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해 산재보험 외에 민간보험을 가입하여 대비하고 있는데, 직종별로 배송, 배달, 전문서비스, 가사·청소·돌봄 직종이 60% 이상으로 나타남. 해당 직종은 산재보험 가입률도 7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적용 및 보호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지원, 소규모영세사업장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필요성이 있음. 또한 노동자의 산재보험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데 저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산재보험의 역할, 기능, 절차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 귀금속세공업계의 경우 매출신고누락 관행이 낮은 산재보험 가입률의 주된 원인으로 보임. 이는 장기간 이어진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서울시 차원의 정책만으로 단기적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중장기적으로 서울시, 세무 당국, 소상공인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4. 산업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

○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심층인터뷰 참여자 대다수가 업무수행 관련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음. 유해위험요인 교육을 받은 노동자 중 상당수는 교육 내용에 있어 노동자 보호 목적이 아닌 시설, 학생 보호 또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주의사항을 전달받았을 뿐이었음.

-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배달, 배송·운전 직종 노동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배달, 배송·운전 직종 노동자 모두 유해위험요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하는 경우 소득손실이 발생하므로 교육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음.

○ 설문조사 분석 결과, 산업안전 관련하여 지금까지 받아본 교육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설문 응답자가 도로교통 관련 법령 교육(20.1%), 산업안전 교육(17.4%), 산재·산재보험 및 지원등에 관한 교육(14.8%), 산업안전교육·도로교통 관련 법령 교육(14.8%), 산재·산재보험 및 지원등에 관한 교육·산업안전교육(10.1%), 산재·산재보험 및 지원등에 관한 교육·산업안전교육·도로교통 관련 법령 교육(9.4%), 없음(9.4), 산재·산재보험 및 지원등에 관한 교육·도로교통 관련 법령 교육(3.4%), 배민교육(0.7%) 순으로 답함. 산업안전교육에 대한 경험은 전부 합하여 51.7, 산재·산재보험 및 지원등에 관한 교육은 전부 합하여 37.7%임.

- 지난 1년 동안 산재 발생 경험에 대해 42.3%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직종별로

는 배달이 60%로 가장 많았고, 그 외 타 직종은 30% 안팎인 것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은 수치임.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배달 직종에 대한 교통안전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함.

○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서울시가 직·간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동교육프로그램에 유해위험요인 교육을 포함, 산재예방 및 보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보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산재 취약노동자의 교육참여도 제고 방안으로서 업종별 인접관심분야 연계 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특히 교육참여로 인한 소득손실 보전을 위한 교육 훈련비 지급 등과 같은 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됨.

- 플랫폼 사업주가 업무 관련하여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때 산업안전이나 산재보험 관련한 교육을 함께 하면 효과적일 수 있음. 현재 배달플랫폼 중 배달의 민족과 쿠팡잇츠는 라이더가 플랫폼 가입시 동영상교육을 이수해야 가입승인이 이루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동영상교육시간에 대한 교육 훈련비도 지급하고 있어 배달의 민족과 쿠팡잇츠 가입 라이더는 모두 안전 교육을 받고 있었음.

- 산업안전교육에 있어 플랫폼 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서울시, 플랫폼 회사, 노동자와 노동단체가 참여하여 플랫폼 가입 및 회원자격유지를 위한 요건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산재 취약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폭넓게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5. 안전보호구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심층인터뷰 참여자 대다수가 자비로 보호구를 구매·사용하고 있었음. 소수의 심층인터뷰 참여자는 사업장에 안전설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설비 부족 및 노후화 등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보호구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있었음.

○ 설문조사 분석 결과, 업무 중 안전보호구 사용 필요성에 대해 70.5%가 필요하다(배달 96.4%, 가사·청소·돌봄 75%, 배송 72.7%, 전문서비스 33.3%) 응답했고, 이 중 실제 업무 중 안전보호구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83.8%(배달 96.2%, 가사·청소·돌봄83.3%, 배송 72.5%, 전문서비스 50%)로 전체 응답자 비율로 환산하면 59.1%에 그침. 여기서 안전보호구 사용자 중 자비로 부담한다는 응답이 90.9%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응답자의 고용형태 중 근로계약관계가 32.8%(정규직 17.4%)인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안전보호구 사용율을 조속히 높여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이전에 안전보호구 구매를 위한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서울시는 산재 취약노동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호구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산재 취약노동자에게 직접 보호구를 지원하는 사업뿐 아니라 사업주가 산재취약노동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할 경우 우수기업 인증 및 포상,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음.

- 라이더,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성이 높고 일단 사

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에 해당될 확률이 매우 높은 직종의 노동자는 안전 보호구 착용이 필수적임. 라이더, 퀵서비스기사는 안전보호구 착용할 경우 사고발생시 노동자 안전확보와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노동자에게 헬멧, 무릎보호대, 안전화 등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플랫폼 회사가 라이더, 퀵서비스기사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대리운전기사는 주취자가 대다수인 고객으로부터의 폭행, 폭언, 무고 등과 같은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고객과의 분쟁발생시 대리운전기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사후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다발함.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가 바디캠을 안전보호구로서 착용할 수 있도록 바디캠 착용 기준을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 교육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6.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대부분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휴게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경우에 휴게시설 미비로 인한 어려움이 컸으며, 방과후교사, 예술강사 등의 경우에도 시설 내 휴게시설 이용권한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되었음.

○ 설문조사 분석 결과, 장시간 노동, 야간근무일수 및 휴일의 직종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설문대상 응답자 중 83.3%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 1개월에 4일 이상 휴무한다는 응답자가 73.2%로 최소한의 휴식을 취하면서 노동하는 것으로 보임. 직종별로 야간 근무일수의 다소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

- 1주 법정연장근로 제한기준 이상(1주 평균 총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응답자가 가사·청소·돌봄(62.5%), 배달(60%), 전문서비스(56.5%), 배송(45.5%),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33.3%), 미술 등 창작활동(14.3%) 순으로 많았음.

- 야간근무일수의 경우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이 1주 평균 야간근무일수가 5일 이상 50%, 3일은 16.7%, 배달이 5일 이상은 40%, 4일은 3.6%, 3일은 18.2%로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 직종이고,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미술 등 창작활동이 57.1%, 가사·청소·돌봄이 50%, 배송이 45.5%로 나타나 야간근무를 많이 하지 않는 편에 속하는 직종임.

- 다만, 가사·청소·돌봄, 미술 등 창작활동 직종은 각 75%, 71.4%가 1개월 동안 8일 이상 휴무하여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직종으로 보임.

○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휴식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을 검토해야함. 구체적 방안으로는 기존 휴게시설 지원사업,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휴게시설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과후교사와 예술강사의 경우 수업시간 배정시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휴게공간이 마땅치 않은 산재 취약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에서 휴게시설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배달(라이더, 퀵서비스기사), 배송·운전(택배, 대리운전기사)는 서울시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였음에도 낮은 접근성과 적은 수로 인해 이동노동자의 이용률이 매우 낮은 상태임. 이에 노동자가 휴식을 취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거리, 건물, 편의점 등을 이용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라이더, 퀵서비스기사의 동선을 고려하여 쉼터를 확대하고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간이쉼터 설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방과후교사와 예술강사는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하여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7. 스트레스 및 감정노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심층인터뷰 참여자 대다수가 사업주 또는 고객(학부모, 학생 포함)과의 갈등상황에서 부당대우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부당대우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심층인터뷰 참여자 대다수가 사업주로부터 사전예방조치나 사후보호조치를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설문조사 분석 결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경험이 확인되었음. 스트레스 관련하여 전체 설문대상 응답자 중 고객의 갑질로 69.8%가 보통 이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는데, 플랫폼 업체(위탁업체, 사용자 등)의 갑질에 대해서는 75.9%가 보통 이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고객보다 상대적으로 플랫폼 업체로부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계약관행, 관리행태에 대한 규제 마련이 필요함.

- 직종별로 고객의 갑질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심함 이상(매우 심함 포함)인 경우가 배송(40.0%), 미술 등 창작활동(28.6%), 배달(27.3%), 가사·청소·돌봄(12.5%), 전문서비스(11%) 순으로 나타나 배송이 스트레스 정도가 타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직종별로 플랫폼업체의 갑질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심함 이상(매우 심함 포함)인 경우가 미술 등 창작활동(42.9%), 배달(41.8%), 데이터입력(33.3%), 배송(32.7%), 전문서비스(16.7%) 순임.

○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소규모 영세 사업장,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스트레스 및 감정노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사업주로부터 기대하기 힘든 산재 취약 노동자군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및 지원 사업을 검토해야 함.

-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8.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심층인터뷰 참여자 대다수에게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건강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았음. 또한 심층인터뷰 참여자 대다수가 건강검진 실시 전 건강진단에 대한 설명 또는 안내를 받지 못했음. 정기 건강검진의 경우에도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는 소득손실을 염려하여 이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

- 심층인터뷰 참여자 중 상당수는 직접적인 질병경험은 없었으나 동료 노동자의 질병사례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많이 있었음. 심층인터뷰 참여자 중 대다수가 정신건강의 위험성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업종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위장질환 등이 나타남.

○ 설문조사 분석 결과, 낮은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대체인력 지원 및 건강검진 수당 등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음.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비율이 전체 설문 응답자 중 53.7%로 2021년 서울시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72.4%(남자 71.5%, 여자 73.2%)¹⁹⁾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직종별로 매년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문서비스(83.7%), 배송(67.3%), 미술 등 창작활동(57.1%), 가사·청소·돌봄(37.5%), 배달(34.5%), 데이터입력 등 단순작업(33.3%) 순임.

- 미수검자의 미수검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4명), 대체인력이 없어서 휴무를 할 수 없어서(12명),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10명), 검진시간에 벌 수 있는 수입이 아까워서(7명), 대체인력이 없어 휴무를 할

19) 서울특별시, 「건강검진통계」, 2021, 2023-01-09,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수 없어서 및 검진시간에 별 수 있는 수입이 아까워서(6명), 필요성을 못 느껴서 및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4명), 검진시간에 별 수 있는 수입이 아까워서 및 필요성을 못 느껴서(3명), 검진시간에 별 수 있는 수입이 아까워서 및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2명), 기타(2명), 검진시간에 별 수 있는 수입이 아까워서 · 필요성을 못 느껴서 ·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1명),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 및 검진을 위한 지원이 전혀 없어서(1명), 대체인력이 없어 휴무를 할 수 없어서 및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1명)로 다양하게 나타났음.

- 상기 미수검 이유를 고려하면 서울시에서 건강검진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내지 건강검진 수당 등의 지원정책을 마련할 경우 플랫폼 노동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등과 같은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산재취약노동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건강검진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대리운전기사, 방송작가 등 정신건강의 위험성이 높은 직종에게 심리치유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인력 및 예산을 충원,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택배기사는 업무공백 시 발생하는 용차비용으로 인해 건강검진, 교육 등을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서울시, 택배회사, 노동조합이 사회

적 협약을 통해 택배회사(원청)에서 용차 담당 상시인원을 확보하여 택배기사가 노동교육, 건강검진, 휴가사용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9. 작업도구 정비 지원의 필요성

○ 설문조사 분석 결과, 오토바이, 택배 차량 등 작업도구를 정기적으로 정비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13.4%이고, 그 이유는 정비할 시간이 없어서(30%),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30%), 정비할 필요성을 잘 몰라서(25%), 정비에 대해 잘 몰라서(15%) 순으로 나타남. 배달(92.7%), 배송(63.6%) 직종에서 특히 작업도구를 정기적으로 정비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라이더와 퀵서비스기사는 주행 중 오토바이 고장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서울시가 배달 직종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오토바이 점검·정비할 수 있도록 관리제도 개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이에 더해 오토바이 점검·정비 비용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엔진오일 등 필수소모품 교체 비용 지원 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10.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지원 필요성

○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심층인터뷰 참여자 전원이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험성 평가와 같은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안전보건과 관련한 감독이나 지도 역시 마찬가지임. 또한 심층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이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안전보건 관련 감독과 관련하여 아예 인지하지 못해 그 개념과 의미조차 모르는 상태였음.

○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서울시는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험성 평가와 같은 유해요인 조사가 필요한 직종의 사업주에게 전문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함.

- 현재 고용노동부와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유해요인 조사가 필요한 직종의 사업주에게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참여도가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지원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우수기업 인증 및 포상, 인증기업에 대한 지자체 발주용역 시 가산점 부여,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배달노동자(라이더, 퀵서비스기사)와 배송·운전 노동자(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와 같이 근골격계질환이 다발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실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사업주에게 전문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사업소, 민간위탁, 발주공사 현장부터 철저하

계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험성 평가와 같은 유해·위험요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현행 안전어사대 제도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11. 서울시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성

○ 설문조사 분석 결과, 서울시에서 기존에 실시한 취약노동자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실제 경험한 비율은 훨씬 낮게 나타남. 정책을 들어봤다는 응답은 노동자쉼터(57.7%), 감정노동종사자 심리상담·치유 지원(49%), 유급병가(42.3%), 배달노동자 상해보험지원(40.9%), 휴가비지원(40.3%), 영세택배사업장 휴게시설 지원(29.5%)이고, 참여해봤다는 응답은 비율은 노동자쉼터(12.8%), 휴가비 지원(7.4%), 유급병가(6.7%), 감정노동종사자 심리상담·치유 지원(4.7%), 영세택배사업장 휴게시설 지원(4.0%), 배달노동자 상해보험지원(3.4%)임. 정책의 수혜를 보다 많이 받도록 할 방안이 필요함.

- 기존 서울시의 취약노동자 지원정책의 강화·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모든 정책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남.

○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기존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던 산재예방 및 지원 정책의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그 참여도 및 인식정도는 매우 낮았음. 따라서 기존 서울시 산재예방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인지도 및 참여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12. 정책적 우선 순위 고려 필요성

○ 설문조사 분석 결과, 설문에서 제시한 새로운 산재예방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한 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 85.1% 임.

- 새로운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한 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산재보험료 지원(90.6%), 고객 갑질 대응지원(88.6%), 건강진단비 또는 건강진단수당 지원(88.6%), 노동자 권리보장 교육(87.2%), 가족돌봄 유급휴가(84.6%),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84.6%), 산재보험 미적용 노동자 치료 및 재활 지원(83.9%),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83.9%), 산업안전보건 준수·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마련·배포(83.2%), 안전보호구 지원(82.6%), 배달노동자 정기정비 수당 지원(77.9%) 순임.

○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고려할 때, 산재예방정책을 수립, 집행할 때 반드시 정책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함.

【참고 문헌】

고용노동부 2021.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고용노동부 2021년 산업재해현황분석

고용노동부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발표 자료

고용노동부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 자료

고용노동부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자료

고혜원, 지방노동행정조직과 기능의 비교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4호, 2006

김경하·정석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특성 및 산재보험지원 활성화 방안, 근로복지연구원, 2022

김준영 외,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한국고용정보원, 2021

박정선 외, 영세소규모 제조업체와 종사 근로자의 산업보건학적 취약성 원인과 대책, 2016

박정우 외, 플랫폼 배달기사 산재안전망 경험 비교와 개선방안, 서울노동권익센터, 2022

백종배 외, 중소기업 산재예방을 위한 교육 등 개선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서용윤,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지원방안, 한국노총 산재예방 토론회 자료집, 2022

오종은·김영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자 보호-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근로복지연구원, 2019

이승우, 지역 안전관리 대표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지자체 노동안전조

례를 중심으로, 2022

이승현 외, 플랫폼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보건 체계 개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장성록 외,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 방안 마련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0

정승호 외, 신산업 노동자 보호 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0

정홍준·장희은,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 종사자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8

주창업 외, 주요 선진국의 산재예방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비교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지자체 노동자 안전을 위한 우선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22

최은숙 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8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 자료집, 2021

한인상·신동윤,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

【부록】 설문지

설문지

ID: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특별시의 의뢰를 받아 “서울시 산재 취약노동자 실태 조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에 대한 귀하의 응답은 서울시가 산재 취약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산재 예방정책을 수립·실시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답변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쓰이며 절대 외부에 유출되지 않습니다. 설문에 답하시는데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서울시가 산재 취약노동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문 담당자 : 김미현 공인노무사
전화 : 02-6341-5180

개인정보 활용 동의

가. 정보수집 :

- 이름
- 전화번호

나. 수집정보의 활용 :

- 설문 응답 완료자 대상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 편의점 상품권)이 제공되나, **응답인원수(인원 수 기재) 제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급함**을 양지해주시시오.

위 내용과 같이, 개인 정보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해당 정보는 즉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설문 참여 상품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이상

※ 복수의 플랫폼 종사 시 주요 플랫폼을 기준으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3. 귀하가 종사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없으면 '기타' 란에 직접 기입하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업종	체크
1	배달·배송·운전(음식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화물배송 등)	
2	전문서비스(통번역·강사·과외·교육·레슨·여행가이드·상담·인테리어 등)	
3	가사·청소·돌봄(가사 및 육아도우미, 청소, 간병인, 반려동물돌봄 등)	
4	미술 등 창작활동(미술,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인, 웹툰, 유튜브 등)	
5	단순 작업(데이터입력, 파일 업로드 등 컴퓨터로 하는 단순작업 등)	
6	기타()	직접 기재

4. 귀하가 현재의 직종에 종사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간	체크
① 6개월 이내	
② 6개월 이상 1년 이내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	
⑥ 기타()	직접기재

5. 귀하가 종사(업무를 위해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하는 플랫폼 업체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규모	체크
① 상시사용근로자 5인 미만	
② 상시사용근로자 5인 이상 10인 미만	
③ 상시사용근로자 10인 이상 30인 미만	
④ 상시사용근로자 30인 이상 50인 미만	
⑤ 상시사용근로자 50인 이상	
⑥ 잘 모르겠음	
⑦ 기타 ()	직접기재

6. 귀하의 플랫폼 업체(플랫폼 앱, 에이전시, 중개업체, 대행업체 등)와 맺는 고용 및 근무형태는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근무계약의 종류	체크
① 용역, 도급 계약관계	
② 근로계약(정규직)	
③ 근로계약(기간제)	
④ 파견직	
⑤ 잘 모르겠음	
⑥ 기타()	직접 기재

7. 최근 평균적으로 1주 동안 귀하의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래 보기 중 체크해주십시오.

근로시간	체크
① 40시간 미만	
② 40시간 이상 52시간 미만	
③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④ 60시간 초과	

8. 귀하는 평균적으로 1주일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로)를 며칠 하는지 아래 보기 중 체크해주시오

일수	체크
① 하지 않음	
② 1일	
③ 2일	
④ 3일	
⑤ 4일	
⑥ 5일 이상	

9. 귀하가 한 달 동안 휴무하는 날은 며칠인지 아래 보기에서 체크해주시오.

일수	체크
① 없음	
② 1일	
③ 2일	
④ 3일	
⑤ 4일	
⑥ 5일	
⑦ 6일	
⑧ 7일	
⑨ 8일 이상	

10. 귀하가 일할 때 고객 또는 플랫폼 업체의 갑질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아래 보기에서 체크해주시오. (복수 응답 가능)

스트레스 원인	스트레스 정도	체크
고객의 갑질	① 매우 심함	
	② 심함	
	③ 보통	
	④ 별로 없음	
	⑤ 전혀 없음	
플랫폼 업체의 갑질	① 매우 심함	
	② 심함	
	③ 보통	
	④ 별로 없음	
	⑤ 전혀 없음	
기타()	스트레스 원인을 직접기재	

10-1. 기타 스트레스 원인을 직접 기재

11-1. 귀하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적용되고 있습니까?

종류	체크
① 고용보험 가입	
② 고용보험 미가입	

11-2. 귀하는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적용되고 있습니까?

종류	체크
① 산재보험 가입	
② 산재보험 미가입	

11-2-1. [11-2.문항에서 2번을 체크한 경우] 귀하가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가입 이유	체크
①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모른다.(정보 부족)	
②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③ 플랫폼 사업장에서 가입에 반대한다	
④ 기타()	직접 기재

11-3. 귀하는 현재 소속된 플랫폼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가요? 아니면 지역가입자인가요?

종류	체크
① 플랫폼 사업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1-4. 귀하는 현재 소속된 플랫폼 사업장에서 국민연금보험 직장가입자인가요? 아니면 지역가입자인가요?

종류	체크
① 플랫폼 사업장 국민연금보험 직장가입자	
② 국민연금보험 지역가입자	

12. 귀하는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질병에 대해 산재보험 외에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오토바이 등 운행을 위해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제외함)

	체크
① 네	
② 아니오	

13. 귀하는 4대보험 관련하여 보험료 지원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체크
① 네	
② 아니오	

14. 귀하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까?

	체크
① 네	
② 아니오	

14-1. [14.문항에서 2번 체크한 경우] 귀하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이유	체크
① 대체인력이 없어 휴무를 할 수 없어서	
② 검진시간에 벌 수 있는 수입이 아까워서	
③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④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	
⑤ 기타()	직접 기재

15. 귀하가 지금까지 받아본 교육이 있으면 아래 보기 중에 체크해주세요 직접 기재시 현재 종사중인 업무 관련 교육만 기재해주세요.

이유	체크
① 산재, 산재보험 및 지원 등에 관한 교육	
② 산업안전교육	
③ 도로교통 관련 법령 교육	
④ 기타()	직접 기재

16.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체크
① 있음	
② 없음	

17. 귀하는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를 했습니까?

이유	체크
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료했다	
② 민간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료했다	
③ 자비만(건강보험 적용 포함)으로 치료했다	
④ 기타()	직접 기재

18. 귀하는 일하는 중에 안전보호구(예: 헬멧, 무릎·손목보호구, 장갑 등)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체크
① 네	
② 아니오	

18-1. [18문항에서 1번 선택한 경우] 귀하는 일하는 중에 안전보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체크
① 네	
② 아니오	

18-2. [18-1.문항에서 1번으로 체크한 경우] 귀하가 일하는 중에 안전보호구를 사용하고 있다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비용부담 주체	체크
① 자비로 부담한다	
② 사업장(플랫폼 업체 등)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③ 기타()	직접 기재

19.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도구(오토바이, 택배차량 등)을 정기적으로 정비하십니까?

이유	체크
① 정기적으로 정비한다	
② 정기적으로 정비하지 않는다	
③ 안전과 관련된 정기적 정비가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19-1. [19.문항에서 2번으로 체크한 경우] 작업도구(오토바이 등)을 정기적으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①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② 정비할 시간이 없어서	
③ 정비할 필요성을 잘 못 느껴서	
④ 정비에 대해 잘 몰라서	
⑤ 기타()	직접기재

20. 다음의 사업들을 경험했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	알지 못함	들어봄	참여해 봄
① 유급병가 지원	①	②	③
② 휴가비(여행바우처) 지원	①	②	③
③ 노동자 쉼터	①	②	③
④ 영세택배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①	②	③
⑤ 감정노동 종사자 심리상담·치유 등 지원	①	②	③
⑥ 배달노동자 상해보험 지원	①	②	③

21. 다음의 서울시 정책들을 강화 또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유급병가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② 휴가비(여행바우처)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③ 노동자 쉼터	①	②	③	④	⑤
④ 영세택배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⑤ 감정노동 종사자 심리상담·치유 등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배달노동자 상해보험 지원	①	②	③	④	⑤

22. 다음 산재예방정책들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들입니다. 각 정책들의 필요성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가족돌봄 유급휴가	①	②	③	④	⑤
② 안전보호구 지원(헬멧, 손목, 무릎보호대 등)	①	②	③	④	⑤
③ 고객 갑질 대응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④ 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⑤ 산재보험료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산재보험 미적용 노동자 치료 및 재활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⑦ 건강진단비 또는 건강진단 수당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⑧ 배달노동자 정기정비 수당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⑨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①	②	③	④	⑤
⑩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①	②	③	④	⑤
⑪ 산업안전보건 준수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마련, 배포	①	②	③	④	⑤
⑫ 기타 - 필요한 산재 정책에 대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